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 / 국립중앙도서관
[편]. --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14
p. ; cm

ISBN 978-89-7383-968-1 94020 : 비매품
ISBN 978-89-7383-223-1 (세트) 94020

저작권법(법률)[著作権法]

023-KDC5
025-DDC21

CIP2014006945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

발 간 사

이 매뉴얼은 2013년 국립중앙도서관이 발주하고 한성대 정경희 교수 등이 수행한 연구용역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 개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도서관에서 취급하는 도서관법상 “도서관 자료”의 다른 이름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입니다. 그리고 이 누군가의 “저작물”은 인격적이거나 재산적인 권리로 보호되는 대상입니다. 이렇듯 보호되는 저작물을 도서관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누군가의 허락을 받거나 그 이용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허락을 받거나 달리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또 도서관을 위해 따로 예외 규정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서관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저작권법의 규정들이 도서관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자료(저작물) 이용 상황에 꼭 맞는 지침을 줄 정도로 구체적이지도 않아서, 저작권 문제는 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에게 늘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밤길을 가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는 진구렁을 피하기 위해 가로등 불빛이 닿는 길로만 돌아서 가는 것처럼, 사서들로 하여금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뉴얼은 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이 안심하고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밝혀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매뉴얼이 사서 여러분들이 저작권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여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매뉴얼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작권법의 개요와 도서관 관련 조항을 다루었으며, 제2장에서는 도서관의 업무유형과 관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3장에서는 도서관 업무유형에 따라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례를 들어 질문과 답변으로 해설함으로써 사서들이 도서관 업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처 수록되지 못한 사례들도 있고, 여전히 명쾌하게 결론짓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매뉴얼 작성을 위해 애쓰신 한성대 정경희(연구책임), 이호신 교수님, 대구 가톨릭대 최상희 교수님과 감수를 맡아주신 한국저작권위원회 최경수 정책 연구실장님과 고려대 이대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기획과 진행을 맡아준 도서관연구소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4년 2월

국립중앙도서관장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

CONTENTS

제1장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1.1 저작권법 개요	14
1.2 저작물의 요건과 종류	15
1.2.1 저작물의 요건	15
1.2.2 저작물의 종류	17
1.2.3 저작물의 구분	20
1) 2차적 저작물	20
2) 편집저작물	21
3)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	22
4) 업무상 저작물	23
5)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4
1.3 저작인격권	26
1.4 저작재산권	29
1.5 저작재산권의 제한	33
1.6 도서관면책 규정	36
1.6.1 적용대상 도서관	36
1.6.2 복제 및 전송 대상 자료	37

1.6.3 이용자 요구에 의한 복제	38
1.6.4 보존용 복제	39
1.6.5 디지털 복제 및 전송	40
1.6.6 보상금 규정	41
1.6.7 온라인자료수집: 국립디지털도서관	42
1.6.8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조치	42
1.7 저작권에 대한 보완적 접근	44
1.7.1 자유이용 라이선스	44
1) Creative Commons License(CCL)	44
2) 공공누리	47
1.7.2 오픈엑세스	48

제2장 도서관과 저작권

2.1 도서관 업무 유형에 따른 저작권 문제	52
2.1.1 장서관리	52
1) 자료의 수집	52
2) 자료의 보존	54
3) 자료의 처분	54
2.1.2 자료의 열람 및 대출	55
1) 열람	55
2) 대출	58
3) 상호대차	58
2.1.3 홈페이지 관리 및 온라인 서비스	61
2.2 관종별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63
2.2.1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63
2.2.2 공공도서관	65
2.2.3 장애인도서관	67

제3장 도서관 업무에 따른 저작권 질의응답

3.1 장서관리	70
[질문 1] 훼손된 도서 표지를 다른 표지로 재분할 경우	70
[질문 2] 미간행 자료를 수집 제공할 경우	71
[질문 3] 공중파 TV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서비스 할 경우	72
[질문 4] 학위논문 저자가 열람서비스 제외 요청을 할 경우	73
[질문 5] 딸림자료의 복제 후 대출	74
[질문 6] 보존용 CD, DVD 대체본 복제	75
[질문 7] 손상된 자료의 복제본 제작	76
[질문 8] 도서관에서 개인 소장 자료를 수업자료로 지정할 경우	77
[질문 9] 보존용 미간행 자료 복제	78
[질문 10] 개인용과 강사용으로 구분된 DVD를 구매할 경우	79
[질문 11] 도서관이 구매한 전자자원의 기증 및 판매	80
[질문 12] 타 도서관 원문 DB를 출력하여 제본, 소장할 경우	81
3.2 열람	82
[질문 13] 도서관내 시설을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열람할 경우	82
[질문 14] 도서관 음원자료를 이용자 개인설비에 저장하려 할 경우	83
[질문 15] 도서관 자료를 사진촬영 할 경우	84
[질문 16] 복수 이용자가 동시에 영상물 열람을 할 경우	85
[질문 17] 공공도서관내 영상 DVD를 열람할 경우	86
3.3 이용자 요구에 의한 복제	87
[질문 18] 집합 저작물에서 한 편을 복제하여 제공할 경우	87
[질문 19] 도서관 설비를 통해 이용자가 저장, 복제를 할 경우	88
[질문 20] 도서관 스캐너를 통한 자료 복제에 대한 도서관 책임	89
[질문 21] 카세트 테이프 자료를 CD로 변환 요청하였을 경우	90
[질문 22] 이용자가 인쇄자료를 스캔요청 하였을 경우	91
[질문 23] 대학 도서관내 복사실에서의 복사에 대한 책임	92
[질문 24] 도서관이 이용자를 대신하여 복사를 하였을 경우	93
[질문 25] 도서관 자료를 복사 제공할 경우 국내외 저작권 적용 차이	94
[질문 26] 도서관 설비로 이용자가 녹음, 녹화하였을 경우 도서관 책임	95
[질문 27] 대학도서관에서 휴학생이 복사를 하는 경우	96

[질문 28] 사진집에서의 사진 복사 적정 분량	97
[질문 29] 특정 기간 발행된 신문의 적정 복사 분량	98
[질문 30] 시집의 적정 복사 분량	99
[질문 31] 지도책의 적정 복사 분량	100
[질문 32] 시각장애인 요청에 의한 도서관 자료 오디오 파일 변환	101
[질문 33] 도서관 구독 전자저널을 사서가 이용자에게 이메일 전송	102
[질문 34] 절판된 자료를 전체 복사하는 경우	103

3.4 대출

104

[질문 35] 비도서 자료의 대출	104
[질문 36] 도서관 DVD나 CD를 이용자가 개인장비로 복사할 경우	105
[질문 37] 이용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서비스할 경우	106
[질문 38] 이용자가 도서관 도서를 녹음하여 청취할 경우	107
[질문 39] 이용자가 대출자료를 복사할 때 도서관의 법적 책임	108
[질문 40] 학생이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웹에서 제공할 경우	109
[질문 41] 이용자가 인쇄자료를 PDF로 변환하여 저장할 경우	110
[질문 42] 이용자가 대출 도서를 복사할 수 있는 분량	111
[질문 43] 도서를 분할하여 전문을 복사할 경우 도서관 법적 책임	112
[질문 44]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용자의 대출 요청	113
[질문 45] 단체관람을 위하여 영상물을 대출할 경우	114

3.5 상호대차

115

[질문 46] 도서관간 복제본을 제공할 경우	115
[질문 47] 정보브로커가 도서관에 복제본을 상호대차로 요청할 경우	116
[질문 48] 미간행 자료를 복제하여 상호대차할 경우	117
[질문 49] 상호대차용으로 복제본을 제작할 경우	118
[질문 50] 손실된 예술작품을 위하여 복제본을 제작할 경우	119
[질문 51] 정기간행물 결호로 인해 복제본을 제작할 경우	120
[질문 52] CD 세트 중 손실된 일부 CD를 복제할 경우	121
[질문 53] 상호대차용으로 요청할 수 있는 도서의 복제 분량	122
[질문 54] 상호대차 시 시차를 달리하여 동일 자료를 복제할 경우	123
[질문 55] 상호대차를 통한 수업목적용 복제물 제공	124
[질문 56] 온라인 학술지 상호대차 여부	125
[질문 57] 이메일을 이용한 상호대차 가능 여부	126

[질문 58] 상호대차로 받은 복사본을 도서관에서 소장하는 경우	127
[질문 59] 상호대차 빈도가 높은 자료를 복제하여 제공하는 경우	128
[질문 60] 상호대차용으로 도서관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할 경우	129
[질문 61] 영리단체와 협약을 통해 전자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여부	130
[질문 62] 상호대차를 위하여 Ariel을 사용한 논문 전문 전송	131
[질문 63] 팩시밀리로 상호대차 자료를 전송할 경우	132

3.6 교사수업지원 133

[질문 64] 학생 교재를 디지털화한 후 개인 전자기기에 제공할 경우	133
[질문 65] 수업자료 목적으로 웹 이미지 제공할 경우	134
[질문 66] 수업자료 목적으로 절판도서를 복사할 경우	135
[질문 67] 학교도서관 자료를 교실에서 수업 지정자료로 배치할 경우	136
[질문 68] 수업자료 목적으로 신문기사 전문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	137
[질문 69]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여 편집교재를 제작할 경우	138
[질문 70] 상호대차 자료를 수업 지정자료로 활용할 경우	139
[질문 71] 수업목적으로 자료를 복사하는 범위	140
[질문 72] 학습목적으로 딸림자료를 복사하여 제공할 경우	141
[질문 73] 학교도서관 멀티미디어 자료를 공연에 활용할 경우	142
[질문 74] 학생 제작과제에 도서관 영상물이 사용된 경우	143
[질문 75] 강의실에 배경음악으로 스트리밍사이트를 활용한 경우	144
[질문 76] 도서관 자료를 스캔하여 강의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할 경우	145
[질문 77] 수업목적으로 교수가 학술논문을 웹을 통해 학생에게 제공	146
[질문 78] 도서관 학술논문을 스캔 후 수업자료로 온라인으로 제공	147
[질문 79] Public Domain 웹 자료의 수업 지정자료 요청	148

3.7 문화프로그램 149

[질문 80] 도서관 그림책을 활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할 경우	149
[질문 81] 도서관 주최로 공연을 할 경우 원작자 허락 여부	150
[질문 82] 도서관 소장 음반 공연 여부	151
[질문 83] 도서관 운영 강좌에서 도서관 소장 영상물을 상영하는 경우	152
[질문 84] 문화프로그램용 도서관 자료 복사 제공	153
[질문 85] 독서장려를 위하여 도서 일부를 온라인으로 게시할 경우	154
[질문 86] 도서관 동화구연프로그램을 위하여 동화책을 그림으로 변환	155
[질문 87] 도서관 동화구연프로그램 운영시 원작자 허락 여부	156

[질문 88] 도서관 동화연구프로그램을 위한 동화책 스캔	157
[질문 89] 도서관 동화연구프로그램에서 원작 내용을 바꿀 경우	158
[질문 90] 비매용 영상물을 상영할 경우	159
[질문 91] 도서관 제작 영상물을 상영할 경우	160
[질문 92] 공공도서관 영상물을 교육적 목적으로 상영할 경우	161
[질문 93] 도서관에서 식음료(유료)와 같이 영상 상영회를 개최할 경우	162
[질문 94] 도서관 영상물을 대상으로 무료상영을 할 경우	163
[질문 95] 도서관 영상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에 대한 제약여부	164
[질문 96] 도서관 문화행사에서 음원을 사용할 경우	165
[질문 97] 학교에서 등하교시 학교도서관 소장 음원을 방송할 경우	166
[질문 98] 도서관 소장 사진이나 그림을 학교행사에 전시할 경우	167
[질문 99] 예술작품을 스캔하여 도서관에서 전시를 할 경우	168
[질문 100] 도서관에서 사진을 전시할 경우 초상권 문제	169

3.8 온라인서비스 170

[질문 101] 도서관 웹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저작권 위반에 대한 책임	170
[질문 102] 기관 내 서버에 DRM을 활용한 원문복사 서비스	171
[질문 103] 원격교육용으로 도서관 자료 DB 구축 후 제공할 경우	172
[질문 104] 학교간 협동수업을 위한 도서관간 전송	173
[질문 105] 도서관간 전송받은 디지털원문 파일 저장 및 출력여부	174
[질문 106] 외부강사 강연을 녹화하여 제공할 경우	175
[질문 107] 저작권이 도서관 모기관에 귀속된 저작물의 디지털화	176
[질문 108] 교비 지원을 받은 저작물의 디지털화	177
[질문 109] 외부지원을 받은 저작물 대상 온라인 서비스	178
[질문 110] 서지 및 초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저작권 동의 여부	179
[질문 111] 정기간행물 목차와 자료 일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경우	180
[질문 112] 소장자료를 외주로 디지털화할 경우	181
[질문 113] 온라인 유통 저작물 사용시 출처 처리 여부	182
[질문 114] 소장 CD를 하드 디스크에 복제할 경우	183
[질문 115] 상호대처를 위해 정기간행물을 자체 DB로 제작할 경우	184
[질문 116] 보존을 위하여 자료를 디지털화할 경우	185
[질문 117] 도서관이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였을 경우 저작권 귀속	186
[질문 118] 보존을 위하여 자료를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	187
[질문 119] 필사본과 미간행원고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할 경우	188

[질문 120] 미간행 원고를 요약하여 디지털화 할 경우	189
[질문 121] 저작권자 허락없이 학술원문구축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190
[질문 122] 딸림자료를 서버에 저장하여 온라인서비스 할 경우	191
[질문 123] 참고문헌을 다른 DB와 링크시켜 제공할 경우	192
[질문 124] 구독중인 전자저널을 재유포 또는 재가공할 경우	193
[질문 125] 인터넷 자료의 다운로드 및 서버 저장 후 서비스 할 경우	194
[질문 126] 교육목적용으로 인터넷 자료 다운로드 및 저장 후 제공	195
[질문 127] 도서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복수의 컴퓨터에 설치할 경우	196
[질문 128] 개인용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사용할 경우	197
[질문 129] 타 도서관 원문 DB를 복제하여 출력을 제공할 경우	198

3.9 콘텐츠 제작

199

[질문 130] 온라인 서점의 표지, 사진, 저자 약력의 사용 가능 여부	199
[질문 131] 영상물 제작시 도서관 소장 음원을 사용할 경우	200
[질문 132] 도서관 홍보물에 소장 그림, 사진을 사용할 경우	201
[질문 133] 도서관이 소장한 미술품을 복제하여 출판물을 제작할 경우	202
[질문 134] 프리웨어를 활용하여 도서관 홈페이지를 제작할 경우	203
[질문 135]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올린 불법저작물에 대한 도서관 법적 책임권한	204
[질문 136] 홈페이지 제작시 클립아트나 그림의 저작권 허락 여부	205
[질문 137] 홍보용 포스터를 썸네일과 메타데이터로 제공할 경우	206
[질문 138] 연속간행물의 목차, 색인의 저작권 보호 여부	207
[질문 139] 동화구연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서비스 할 경우	208
[질문 140] 도서관 개설 강좌에서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경우	209
[질문 141] 도서관 소장 이미지 자료를 웹사이트 구축에 활용할 경우	210
[질문 142] CCL 정의	211
[질문 143] CCL 라이선스 저작물 이용 방법	212
[질문 144] 도서관 홍보에 인기 만화 캐릭터를 사용할 경우	213
[질문 145] 학교도서관에서 지원하는 학교신문에 소장자료를 일부 수록할 경우	214

3.10 홈페이지 관리

215

[질문 146]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음원의 도서관 홈페이지를 위한 재사용	215
[질문 147] 이미지, 음원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경우	216
[질문 148] 온라인 서비스와 이용자 수	217

[질문 149] 홈페이지 글꼴의 저작권 허락 여부	218
[질문 150] 도서관 직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도서관 책임	219
[질문 151] 홈페이지 관리 외부 직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도서관 책임	220
[질문 152]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설비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구축하였을 경우	221
[질문 153] 도서관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도서관 책임	222
3.11 기타	223
[질문 154] 도서관 사서 저작물의 저작권 범위	223
[질문 155] 필사본의 저작권 귀속 여부	224
[질문 156] 학교도서관이 수집한 학생 작품의 저작권 여부	225
참고문헌	226

표 목차

〈표 1〉 저작재산권의 종류	29
〈표 2〉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 보상금	41
〈표 3〉 CCL의 이용허락 조건	45
〈표 4〉 공공누리의 유형 및 이용허락 범위	47
〈표 5〉 한국영화배급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57
〈표 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64

그림 목차

〈그림 1〉 CCL 라이선스 유형	46
--------------------------	----

제 1 장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 1.1 저작권법 개요
- 1.2 저작물의 요건과 종류
- 1.3 저작인격권
- 1.4 저작재산권
- 1.5 저작재산권의 제한
- 1.6 도서관면책 규정
- 1.7 저작권에 대한 보완적 접근

1.1 저작권법 개요

저작권은 문학작품이나 음악곡, 미술작품 또는 학술논문과 같은 저작물을 만들어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공중송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다. 지적재산권은 지적 활동의 결과물로 생산되는 아이디어 또는 표현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그 권리의 대상 자체가 무형의 지적 생산물이라는 점에서 무체재산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서 부여되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을 지칭하며, 일정한 출원과 등록의 절차를 거쳐서 권리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는 구분이 된다. 반면에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저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를 뜻하며, 저작물에 드러난 저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이 그 권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산업재산권과는 구별이 된다.

지적재산권은 그 권리의 보호 대상이 특정한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객체를 기반으로 하는 소유권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소유권은 물건의 실체가 존재하는 한 영원토록 보장이 될 수 있는 권리인 반면에 지적재산권은 그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도 특징이 있다.

1.2 저작물의 요건과 종류

1.2.1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첫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만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식당의 메뉴판이나 열차시각표와 같이 단순한 사실들을 모아 놓은 것과 지극히 정형화된 계약서¹⁾와 같은 것은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또한 기계의 순차적인 조작의 결과로 생산되는 결과물들도 저작물에 해당이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사상이나 감정은 아주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내용이나 심리학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상의 범위에 지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순수한 기술과는 구분되는 기술적인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 특정한 매체에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인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우리 법의 경우에는 특정한 매체에 고정되어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1) 계약서의 경우에는 학자에 따라서 아예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주장과 또 다른 경우에는 극히 진부한 정형적인 내용의 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계약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자의 주장이다. 반면에 계약서의 경우에도 특정한 거래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그 대처방안을 적절한 문장표현과 조문 배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저작자의 사상(특히 법적 사고)이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 후자의 주장이다. (이해완 2012, 33)

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상과 감정에 대한 표현이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외부로 드러나기만 하면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인 형체를 가지지 못하는 연설이나 강의, 공연, 즉흥춤의 안무의 경우에도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또 다른 요건은 창작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옮겨 놓기만 한 것은 저작물이 될 수 없다. 여기에서의 창작성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직접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안에 저작자의 창조적인 개성이 표현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창조적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물 작성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누가 만들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의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창조적 개성은 높은 수준의 예술적인 성취나 표현력을 지칭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문장력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 찬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작자의 고유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나는 사상이나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유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경우라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아닌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 출판이나 배포의 과정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구분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저작물을 창작해서 발표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여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사상과 감정의 내용은 저작물의 발표와 동시에 저작권자의 손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 모두와 공유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상과 감정의 공유를 통해서 그 사회의 문화적 성취는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저작권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문화의 향상·발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에서 저작물의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담고 있는 표현만을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저작권의 일반적인 적용 패턴이다. 그렇지만 어디까지가 아이디어이고 어디까지가 표현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에 딜레마가 있다. 예컨대 음악작품의 어디까지를 아이디어로 보고 어디까지를 표현으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1.2.2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은 그 표현의 형태에 따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보호의 세부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게 구성된다.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물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조문의 명칭인 ‘저작물의 예시’ 자체가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저작물의 종류를 개괄적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에 포함되지 못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물로서의 요건(창작성,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물)을 갖추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어문저작물은 말과 글을 매개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을 말하며, 유형의 문서로 작성된 저작물과 무형의 구술에 의한 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 법은 특정한 매체에의 고정을 저작물로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매체에 고정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외부로 표현된 경우라면 모두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사전 원고 없이 이루어지는 강연이나 연설의 경우에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어문저작물이 반드시 문학적인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종 지침서, 편람 등도 창작성 등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어문저작물로 성립이 될 수 있다.

음악저작물은 음(음성과 음향)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을 지칭한다.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음악의 악곡뿐만 아니라 편집자의 창작성이 가미된 음향과 효과의 경우도 저작물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작성된 음악, 자연의 소리를 채집한 음향 등은 그 자체로서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 가사를 동반한 노래의 경우에는 가사는 어문저작물로, 그 음악은 음악저작물로 각각 분리되어 활용될 수 있다.

연극저작물이란 무용이나 연기 등의 실연의 토대가 되는 동작의 형태를 일컫는다. 연극의 바탕을 이루는 각본의 경우에는 어문저작물로 분류가 되며, 배우의 연기 자체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보호가 되는 것은 연극이나 무용의 전체적인 동작의 형태가 된다. 안무자가 직접 공연한 무용 작품의 경우에는 창작자와 실연자가 구분이 되지 않는 점이 있어 몇몇 국가에서는 무보 등으로 특정한 매체에 그 안무의 내용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저작물로 인정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특정한 매체에의 고정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모두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매체에 고정되지 않는 즉흥연기나 즉흥무용도 모두 저작물로 성립될 수 있다.

미술저작물이란 형상이나 색채를 활용하여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미적(美的)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지칭한다. 조문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처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이 이러한 영역에 포함되며, 만화, 삽화 등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응용미술저작물에 포함이 되는 특정한 도안이나 디자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도 한다. 또한 미술작품의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미술품 소장자의 권리와 저작권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조율되기도 한다.

건축저작물은 건축물과 건축을 위한 모형과 설계도서를 지칭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건축물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되어야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개성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 일반주택 등의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건축물의 범주에는 주택이나 사무실과 같은 주거가 가능한 건물은 물론이고, 교회나 정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정원, 다리, 탑과 같은 경우에도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적인 건축저작물이 될 수 있다. 건축저작물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시공하는 행위도 복제에 해당된다.

사진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광학기계장치에 의하여 정지된 화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지칭하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사진기라는 기계적인 장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미술저작물과 구분이 되며, 정지된 화상을 표현매체로 한다는 점에서 연속적인 영상을 표현하는 영상저작물과 구분이 된다. 사진기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복사기나 인쇄의 방법에 의해서 제작된 것도 사진저작물에 포함될 수 있다. 사진저작물의 창작은 이미 존재하는 피사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재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진 창작자에 의한 피사체의 선택, 조명과 노출의 정도, 촬영의 기술 등이 적절하게 조합된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피사체를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데에 불과한 증명사진 등의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유명 화가의 그림을 사진으로 재촬영한 경우는 미술저작물의 복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진저작물로 볼 수 없다. 사진저작물 가운데 위탁에 의하여 제작된 초상화나 사진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라고 하여도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나 전자적인 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음을 수반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물로서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모두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영상기록이 영상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연극을 영상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영상

촬영과 편집 과정에 촬영자와 편집자의 독자적인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연극저작물로 분류가 된다. 영상저작물의 제작과정은 다른 저작물의 작성과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저작권 관행에 따르게 되면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저작물 사용에 관한 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영상저작물의 활발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영상제작자에게 귀속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형저작물은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다른 저작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1.2.3 저작물의 구분

1) 2차적 저작물

이밖에도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물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에 따라 몇가지 구분 방법을 더 제시할 수 있다. 먼저 2차적 저작물(secondary works, derivative works)이다. 2차적 저작물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다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외국 문학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한 경우, 다른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곡조를 활용해서 새로운 음률로 편곡한 경우 등을 모두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이나 편곡과 같이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요약하거나 발췌하는 행위 등 원저작물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모든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2차적 저작물을 적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 제작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그 자체의 저작권은 그대로 유효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2차적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원저작자와 2차적 저작물 작성자의 허락을 동시에 얻어야만 한다.

2차적 저작물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원저작물을 실제로 변화시킨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아주 미세한 변화만을 주었다면, 이 경우에 만들어진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원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반면에 원저작물을 대폭 변화시켜서 실제로 아주 다른 저작물이 만들어졌다면 이 경우에는 또 다른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독립적인 저작물인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저작물인지를 놓고 실제로 많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원저작물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저작물의 상당 부분이 변화되어 새로운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어디까지가 이러한 범주에 포함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2차적 저작물인지 독립저작물인지를 구분하는 판단의 기준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해당 저작물이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 있는 저작물인가의 여부이다.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원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2) 편집저작물

두 번째로, 편집저작물이다. 편집저작물은 여러 저작물을 한 데 모아 놓은 것이나, 특정한 부호나 기호, 도형, 영상, 이미지 등을 모아 놓은 편집물 가운데 그 소재의 배열과 선택 혹은 그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를 지칭한다. 따라서 단순히 자료를 수집해서 배열해 놓은 편집물의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전화번호부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 데 모아 일률적으로 배열해 놓은 자료의 경우에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이 독특한 특성을 가지지 않는 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한 가지 더 참고할 것은 편집물의 범위에는 데이터베이스도 포함이 된다는 점이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성이 표출되고 있는 경우에만 편집저작물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2차적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에 변형을 가해서 만들어지지만, 편집저작물은 그 소재가 되는 저작물에 변형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그 권리를 보호받는다. 그렇지만 적법하게 편집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자료로 사용되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편집저작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저작권자에게 적법한 허락 없이 만들어진 경우에도 독립적인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편집저작물에 저작물이 활용된 것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3)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

세 번째로,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을 들 수 있다. 결합저작물이란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여러 사람의 저작물을 한데 모아 놓은 것을 말한다. 저작자로서 각자 기여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결합저작물에 해당이 된다. 이 경우에 저작권은 각자의 기여한 부분에 독립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어떤 책의 일정한 부분은 이아무개가 쓴 것이고, 다른 부분은 이것과 관계없이 김아무개가 쓴 것이라고 하면 앞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아무개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다른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김아무개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공동저작물이란 여러 사람의 공동 작업의 결과물로 생산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거나, 따로 떼어내어 활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특정한 실험에 함께 참여한 연구집단이 공동의 명의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면, 그 보고서의 작성과정에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공동저작물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 저자 모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며, 그 활용을 위해서는 모든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그리고 공동저작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저작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모든 공동 저작자들의 허락이 필요하다. 공동저작물을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없이 특정한 저작자가 임의로 이용을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허락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공동저작물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모두의 허락이나 동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4) 업무상 저작물

네 번째로, 업무상 저작물이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실제 창작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자연인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저작권을 경제적인 거래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영미법계에서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게도 저작권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저작권을 인격적인 권리와 경제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이원화시켜서 파악하는 대륙법계에서는 자연인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도록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대륙법계의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예외적으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도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9조). 따라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모두 저작자인 법인에게 부여가 된다.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호기간을 공표된 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업무상으로 작성하는 저작물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첫째, 법인이나 단체 등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을 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인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사용자도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 사용자가 일정한 의도에 따라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피용자에게 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저작물을 직접 작성하는 피용자는 법인 등과 사용관계를 맺고 있어야만 한다. 사용관계에는 통상적인 고용관계가 포함됨은 물론이고 실제적인 지휘와 감독관계가 존재하는 관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렇지만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에 의한 수급인이나 수임인까지를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자신의 전문적인 역량과 재능을 발휘하여 발주자의 주문사항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의 저작자는 직접 창작적인 표현에 관여한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된다. 셋째,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작성자가 자신의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저작물의 작성 자체가 업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작성자가 저작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업무의 결과물로 탄생되는 저작물의 경우에 한해서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넷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한다. 법인 명의로 공표되지 아니하고 저작물 작성자의 명의로 공표된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이 될 수 없다. 이전 법률에서는 저작물 작성자의 기명이 표시가 된 경우에는 아예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율이 되었다. 그러나 법인 등이 저작권 상실을 우려하여 아예 저작자의 기명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작물의 공표가 법인 등의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실제 저작물 작성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 등이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된 것이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섯째, 피고용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 또는 근무규칙 상에 저작권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어야 한다. 업무상 저작물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계약에 '실제로 저작물을 작성한 자를 저작자로 본다'는 의미의 특약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하여 적용됨을 의미한다.

5)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우리 저작권법은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저작물성을 갖추지 못한 시사보도와 저작물성은 갖추었으나 그 성격상 공공에게 널리 이용시키기 위하여 생산된 헌법, 법률, 국가의 고시, 법원의 판결 및 행정심판 절차의 의결사항 등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포함된다.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3 저작인격권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가 가지는 인격적인 권리와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저작물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재산적인 권리로 구성이 된다. 좁은 의미로 저작권을 지칭할 때에는 저작재산권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저작인격권까지도 함께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고,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도 또한 각각의 세분화된 지분권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일러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재산권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저작자 자신에게만 전속하는 권리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하는 것과 동시에 인격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저작자가 살아 있었다면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에서는 저작인격권을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이렇게 세 가지의 권리로 구성하고 있다. 공표권은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출판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표권은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미 공표가 이루어진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공표권은 저작물의 최초의 공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효력이 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공표권은 이미 행사된 것으로 간주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물 사용허락이나 저작권을 양도 받은 사람이 공표권으로 인하여 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도서관이나 기록관에 저작자가 특별한 의사 표시 없이 제공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지증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권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둘째,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매체에 자신의 실명이나 이명, 필명 등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자신의 저작물에 다른 사람이 저작자임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가지고 있다. 성명표시권은 공표권과는 달리 이미 공표가 이루어진 저작물에 대해서도 모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자가 실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에 저작물 이용자가 임의로 이명 또는 무명으로 공표를 하거나,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실명을 표기하는 것, 실제 저작자와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모두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해당이 된다.

제12조 (성명표시권)

-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셋째,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목을 바꿀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물을 제3자가 임의로 변경, 삭제하여 당초 저작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그렇지만 오·탈자의 수정이나 저작자의 의도와 전혀 무관한 사소한 사항의 변경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13조 (동일성유지권)

-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1.4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여러 행태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지분권을 총칭하는 것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거래의 대상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우리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지분권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권리의 보장 내용이 약간씩 상이하게 구성이 된다.

〈표 1〉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	내용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복제권은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복제를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공연권은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하거나 타인이 공연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연은 통상적인 범위의 공연의 개념보다 그 폭이 넓은 것으로,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통상적인 범위의 공연의 범위를 넘어서는 비디오나 영상자료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영하는 것도 공연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해석해야 한다.

공중송신권은 이전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전송권과 방송권을 통합한 것이며, 거기에 디지털음성송신권이라는 권리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공중송신권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송으로 규정하기도, 방송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운 부분들까지를 포괄하기 위한 권리 개념이다. 우리 법에서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방송’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신할 수 있게끔 음과 영상 또는 음이나 영상을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송’은 여러 사람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에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은 송신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시간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송은 저작물 이용을 위한 시간을 수신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한편 ‘디지털음성송신’은 웹 캐스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방송은 아니지만 방송과 유사하게 여러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수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디지털 방식의 음성 또는 음향을 송신하는 것을 지칭한다. 공중송신권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저작물 이용행태를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무선 또는 유선, 방송형 또는 주문형(on-demand) 등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송신하는 행위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전시권은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에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권리로서,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공개적으로 진열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한다. 미술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저작자와 그 원본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원본 저작물의 소장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소장한 저작물을 활용해서 일정기간 전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미술 저작물 등의 판매를 위하여 저작물의 이미지를 복제하여 도록 등을 제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제작이 되는 도록은 저작물의 판매를 돕기 위한 수단 정도에서 그쳐야지, 감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고급스럽고 세밀하게 인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원작품을 대체할 수 있을만한 도록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항시적으로 저작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배포’라 함은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배포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제공을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배포권은 물리적인 매체의 이동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전송이나 방송, 복제 등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배포권은 통상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한 번 행사를 하게 되면 그 권리가 사라져버린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입수한 저작물이라면 그 소유자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판매에 제공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도서나 음반을 대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적법한 방법으로 구입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대여권은 배포권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는 판매용 음반, 컴퓨터프로그램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에만 국한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만화의 상업적인 대여에 대해서도 대여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생산해 낸 저작물을 바탕으로 또 다른 저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각색, 번역, 편곡, 변형하거나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또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새로운 저작물을 의미한다. 2차적 저작물의 적법한 작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의 작성에 기여한 번역자, 각색자, 편곡자, 영상제작자의 저작권은 보호될 수 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거나 상관없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한다.

1.5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문화의 향상·발전에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이용자의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서로 상반되는 이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통해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권리인 저작권을 지나치게 보호하게 되면,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어려워져 오히려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버리고 말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우리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저작권의 제한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설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누구나라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저작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한·EU자유무역협정과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전까지는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 이던 권리의 보호기간을 20년 더 연장한 것이다.

둘째,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이다. 대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들로 아래와 같다.

- ① 재판 절차에서의 복제(제23조)
- ②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 ③ 학교 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제25조),
- ④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 ⑤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제27조),
- 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 ⑦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제29조),

- ⑧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⑨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와 전송(제31조),
- ⑩ 시험문제로의 복제(제32조),
- ⑪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제33조),
- ⑫ 제33조의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⑬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제34조),
- ⑭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 ⑮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 2),
- ⑯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 3)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저작권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저작권법 제35조의 3이 규정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권 제한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다른 조항들과는 달리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면책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기준 네 가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고려하여 침해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항변의 사유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면책이 되는 범위와 요건 자체가 추상적이고, 아직까지 관련된 판례도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적용에 애로사항이 있다.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셋째, 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권한 있는 기관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법정허락의 경우이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법정허락에 의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공표된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파악할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1.6 도서관면책 규정

우리 저작권법은 제31조를 통하여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복제 및 전송에 대하여 저작권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고도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것은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 즉, 모든 사람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 및 서비스하려는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이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경우 설령 그것이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른 면책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저작권법시행령 제12조).

제31조는 크게는 전통적으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인 이용자 요구에 따른 복제 및 도서관의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에 대한 규정(제31조 제1항)과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자료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한 규정(제31조 제2항 ~ 제5항)으로 구분된다. 물론 이들과 관련된 도서관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 복제와 전송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31조의 각 항은 도서관이 복제와 전송을 하기 위해 지켜야하는 까다로운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1.6.1 적용대상 도서관

우선 제31조는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서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말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는 이에 대하여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교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전문도서관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업체에 부설된 전문도서관이 그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영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는 정보공유와 교육 기능을 실현하려는 도서관에 대하여 저작권 면책을 부여한다는 저작권재산권 제한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범위가 된다. 그러나 만일 그 전문도서관이 소속 직원만이 아니라 관련

분야 학생, 연구자에게까지 도서관을 개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것도 그 전문도서관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을 경우 제31조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도 제31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다. 예컨대 기록관 등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며, 주민센터 등에서 설치해 놓은 자료실 등도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자료실을 비영리 목적의 기관에서 설치한 것이어야 하며, 해당 자료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1.6.2 복제 및 전송 대상 자료

제31조에 근거하여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자료는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이므로 사실상 도서관의 모든 유형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물을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으로 예시하고 있다. 도서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장자료를 도서자료와 비도서자료로 구분한다. 도서관 자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단행본이나 정기간행물은 어문저작물에 해당되며 그 외 악보, 음반, 사진, 미술품, 영상자료 등의 비도서자료 역시 저작권법 제4조에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이 모든 자료는 저작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 표현방식이 다르다고 하여 제31조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복제 및 전송을 하려는 그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즉, 이용자가 자신이 소장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복사를 요청하거나 도서관이 외부에서 빌린 자료로 복제하는 것은 제31조에 의거한 복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저작물 일부분을 복제해 줄 경우(제31조 제1항 제1호)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도 그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로 간주된다.

1.6.3 이용자 요구에 의한 복제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서관은 그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를 사용하여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는 없다.

위 규정은 첫째, 복제하는 도서관에 해당 자료가 보관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복제의 목적이 조사 또는 연구 등의 비영리적 목적이어야 하고, 셋째, 이용자가 그 복제를 요구해야 하며, 넷째, 복제하려는 자료가 공표된 것이어야 하며, 다섯째, 도서 등의 일부분 복제이어야 하고, 여섯째, 1인에게 1부만 제공할 수 있고, 일곱째, 디지털 형태로 복제물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이용자가 자신의 자료를 가지고 오거나 도서관 이외의 시설에서 빌려온 자료를 복제하는 것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유료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비용을 받고 복제물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도서관에 복제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또는 빈번히 이용되는 자료라고 판단하여 미리 사서가 다수의 복제물을 제작해 놓는 행위 등은 위 규정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다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의 경우 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제5항에서 미공표 저작물을 저작자가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미공표자료는 주로 저작자의 기증에 의하여 도서관에 입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복제물 배포 등을 금한다는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공표된 저작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복제물을 제공할 때 저작물의 ‘일부분’만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일부분도 1인에게 1부만 제공해야 한다. 이중 가장 모호한 것은 ‘일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인가이다. 저작권법은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여 놓지 않았다. 이것은 모든 저작물에 ‘일부분’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사진저작물은 1장이 하나의 저작물이므로 이에 대해 어문저작물에 적용되는 일부분 개념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시 1편도 경우에 따라 일부분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중앙도서관복제업무규정』 제6조에서는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복제(1/3)에 한하며”로 정하고 있다. ‘일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1/3 규정은 다른 도서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용자 요구에 따른 복제의 경우 그 복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즉,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일부분이라도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 이용자의 USB에 저장해주거나 이메일로 제공해주는 것은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저작재산권자로부터의 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가 음악 CD나 DVD의 일부분을 복제해달라고 할 경우 이 역시 디지털 복제물 제공이 되므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1.6.4 보존용 복제

제3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는 보존용 복제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도서관 등은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복제를 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도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복제하려는 자료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을 경우 보존용 복제라 할지라도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도서관이 해당 디지털 저작물을 구매하여 보존해야 한다.

보존용 복제물을 만드는 것은 주로 자료 소장공간이 협소하여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축소 복제하는 경우이거나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복제 등을 보존용 복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VD 등 자료 1개를 구입한 후 훼손을 염려하여 복제본을 만든 후 대출 및 열람에 활용하는 것은 보존용 복제에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절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제31조 제1항 제3호). 이 경우에는 저작물 전체의 복제물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디지털 형태로 제공할 수는 없다. 절판이라는 것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지만 그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다소 불명확하다. 다만 정상적인 유통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고가라는 것, 혹은 해당 자료를 구입하는데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 등은 절판에 준하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6.5 디지털 복제 및 전송

도서관은 보관된 도서 등을 도서관 내 혹은 다른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가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 이것은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각 도서관이 소장 자료를 활용하여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만일 복제하려는 자료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을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31조 제4항). 또한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지 않을 경우라도 다음의 몇가지 제한 조건 하에서 도서관은 소장자료를 디지털로 복제할 수 있다. 이를 도서관내 복제 및 전송과 도서관간 복제 및 전송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서관내 복제 및 전송은 해당 도서관 이용자들이 그 도서관 내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소장 자료를 디지털로 복제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즉, A라는 도서를 1권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 이 자료를 디지털로 복제하여 동시에 열람시킬 수 있는 이용자수는 1명이다. 물론 해당 도서의 저작권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다면 동시열람자수는 얼마든지 많아질 수 있다.

도서관간 복제 및 전송은 디지털로 복제한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도서관간 전송이 가능한 도서는 해당 자료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료이다. 5년 경과 규정은 해당 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비매용으로 출판된 경우에는 발행일과 무관하게 도서관 간에 전송할 수 있다.

1.6.6 보상금 규정

도서관이 교육 혹은 정보공유를 위하여 서비스하는 기관이므로 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작권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장한 자료를 모두 디지털로 복제하고 도서관간에 전송한다면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정도의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디지털 복제물의 출력과 전송에는 보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보상금이 부과되는 행위는 첫째, 도서관에 소장된 디지털 자료, 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자료 혹은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송받은 디지털 자료를 이용자가 출력하는 경우와 둘째,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송 받은 디지털 자료를 도서관 내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열람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권권자로 하는 도서 등이 비매용으로 발행되었다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즉, 국가가 저작권권자인 자료로 하더라도 그 자료가 판매용으로 발행되었을 경우라면 보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보상금 금액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3년 3월 12일에 고시된 보상금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 보상금

구 분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령	전 송 (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도서 등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1.6.7 온라인자료수집: 국립디지털도서관

한편 저작권법 제31조 제8항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을 위하여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경우에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에 의하여 국가에서 생산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보존하여 이를 후대에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자료의 경우 수집과 동시에 디지털 복제가 이루어지므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온라인 상에 있는 자료도 출판된 자료와 마찬가지로 국가 대표도서관이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용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제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다.

1.6.8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조치

저작권법 제31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13조는 도서관이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도서관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선 불법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자가 열람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 조치, 도서관 등의 이용자 외에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도서관이 소장된 자료를 디지털로 복제하여 도서관 내에서 또는 도서관간 전송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컴퓨터 화면상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한 제31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자료를 컴퓨터 화면으로 열람한 후 USB 등에 복사해 가거나 이용자의 집등에서 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자와의 계약이나 이용허락에 의하여 관외전송이나 디지털 복제가 허용된 자료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서관 직원을 교육하는 것과 셋째,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②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7 저작권에 대한 보완적 접근

1.7.1 자유이용 라이선스

1) Creative Commons License(CCL)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나 공연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가 창작의 과정에 들인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통적으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출판하면서 그의 저작재산권을 출판사에게 배타적으로 양도한다. 그리고 저작권을 양도받은 출판사는 공중이 출판된 저작물을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게 함으로써 출판에 들인 비용과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노력을 보상할 수 있는 비용을 회수한다. 만일 무단으로 출판물이 복제될 수 있고 많은 이용자들이 출판물의 구매보다 이러한 무단 복제물을 이용하게 된다면 출판사나 저작물 창작자는 그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기 어려워진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상황을 제어할 수 있도록 창작자에게 복제 등 출판된 저작물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용자들은 복제 등의 방식으로 특정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재산권자는 그 허락에 대한 대가로 저작권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무료로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

그런데 모든 창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출판하여 이용자들이 복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어하고 그 이용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무료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시키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의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무방식주의 즉,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등록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부여된다.

인터넷 상의 저작물은 그 창작자가 실제로는 자유로운 이용 및 재사용을 염두에 두고 배포함에도 불구하고 무방식주의를 따르는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Creative Commons에서는 2002년 몇가지 조건을 준수할 경우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할 수 있는 자유이용 라이선스인 Creative Commons License(CCL)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는 2005년 한국정보법학회가 Creative Commons Korea(CCK)를 발족시킨 후, 한국저작권법의 체계에 맞춘 CCL Korea를 발표하였다.²⁾ 따라서 저작자 중에서 공중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특정한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이용시키기를 원할 경우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저작자가 적용한 라이선스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CCL을 적용하려는 저작자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 4가지이며 이 요건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저작자표시"는 모든 라이선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며, 4가지 요건을 조합한 6종류의 라이선스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 3〉 CCL의 이용허락 조건

기호	의 미
	저작자 표시(Attribution)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는 의미.
	비영리(Noncommercial)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영리 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

2) 〈<http://cckorea.org>〉

이러한 이용허락 조건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의 예는 아래와 같다.

라이선스	이용조건	문자표기
	저작자표시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CC BY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CC BY-NC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C-ND

〈그림 1〉 CCL 라이선스 유형 (<http://cckorea.org/xe/?mid=ccl>)

2) 공공누리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을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라이선스인 공공누리(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공공누리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 4〉 공공누리의 유형 및 이용허락 범위

유형 및 심벌마크	이용허락의 범위
<p>[제1유형: 출처 표시]</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p>
<p>[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p>
<p>[제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없다.</p>
<p>[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p>

1.7.2 오픈엑세스

저작권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에게 그가 창작과정에 들인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생산된 저작물 특히 학술논문의 경우 이러한 경제적 보상시스템으로서의 저작권법은 적절히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학술논문의 생산자인 연구자들은 그 노력에 대한 댓가로 경제적 이익 보다는 자신의 논문이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배포되어 이용되고 인용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하여 연구자는 명예와 명성을 확보하게 되고, 그로써 연구기금의 확보나 승진, 상 등을 받게 된다. 출판을 통하여 저작물이 판매되고 그로써 생산과정에 투입된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일반 저작물과 달리 학술논문을 생산하는 연구자에게 보상이란 바로 이러한 비금전적인 것들이다. 이런 종류의 보상은 저작물 이용과정을 통제(즉, 비용을 요구하거나 이용허락을 요구하는 등)하는 것보다 더 널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때 더 커진다.

1990년대 이후 영어권 국가의 학술지는 주로 대규모 상업적인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배포되었고, 이들 데이터베이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학술도서관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학술데이터베이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도서관의 학술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실제로 구독하는 학술지 수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학술논문을 생산한 연구자들이 전혀 영리를 목적으로 논문을 생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유통 방식은 학술논문을 영리를 위한 상품으로 전략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오픈엑세스(open access)이다. 오픈엑세스란 인터넷 상에서 재정적, 법적, 기술적 장애 없이 누구나 학술논문의 전문(fulltext)을 읽고, 내려받고, 복제하고, 배포하고, 인쇄하고, 검색하고, 링크하고, 색인을 위하여 논문을 수집하고, SW에 대한 데이터로 사용하거나 기타 그 외의 합법적인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픈엑세스는 첫째, 연구자가 오픈엑세스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둘째, 전통적인 학술지에 출판한 후 연구자가 직접 자신의 논문을 오픈엑세스 아카이브에 기탁하는 방법(self-archiving)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오픈엑세스 학술지란

누구든지 특별한 허락절차 없이,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수록된 논문을 읽고, 디지털 복제하거나, 전송, 출력할 수 있도록 한 학술지이다. 연구자가 이러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면 자연스럽게 그 논문이 오픈엑세스 상태가 되므로 오픈엑세스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된다.

오픈엑세스 아카이브는 오픈 액세스 방식으로 논문을 제공하는 아카이브를 말한다. 이러한 아카이브는 대학이나 연구소, 단체, 국가 등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수록된 논문이 기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영구히 보존되어야 하며, 이용에도 기술적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픈엑세스 학술지를 출판하는 출판사나 오픈엑세스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기관은 수록된 논문이 오픈엑세스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CCL 등의 자유이용 라이선스이다.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학술논문 저자가 창작과 동시에 자신의 논문을 복제, 전송, 배포 등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밝혀 놓음으로써, 이용단계에서는 별도의 허락절차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제 2 장

도서관과 저작권

- 2.1 도서관 업무 유형에 따른 저작권 문제
- 2.2 관종별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2.1 도서관 업무 유형에 따른 저작권 문제

도서관은 자료를 수집·조직·분석·보존하여 이용자들에게 열람 및 대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양 및 문화향유 등의 일반적인 이용과 조사, 연구, 학습,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업무는 도서관의 종류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 각 업무별로 저작권과 관련 있는 부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1.1 장서관리

1) 자료의 수집

도서관이 수집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일반적으로 출판된 것이지만 미출판 자료도 일부 포함된다. 또한 도서관이 수집하는 자료는 인쇄자료뿐만이 아니라 음악자료, 사진자료, 영상자료, 전자자료, 단행본 자료, 연속간행물 자료, 팸릿자료 등 그 표현방법이나 수록매체, 간행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이러한 자료는 거의 모두 창작성이 있는 자료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다.

도서관 사서들은 도서관 자료의 유형에 따라 저작권법의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은 표현형식이나 수록매체 또는 간행형식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인지를 구분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어떠한 매체에 수록되어, 어떤 방식으로 간행되었던지 그 저작물에 창작성이 있을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다만,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있어서는 저작물의 유형이나 공표여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각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서 대상으로 하는 저작물이 어떤 유형의 저작물인지를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염두에 둘 것은, 도서관의 자료 수집은 저작권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인쇄자료 등을 구입하거나 기증받아 자체 보존 목적으로 복제하지 않는 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다만, 예를 들어,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복제를

수반하기 마련이므로 이 또한 허용되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 대비하여 2009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저작권법 제31조 제8항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을 위하여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복제물을 제작하여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사서가 방송물을 복제하여 도서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는 행위도 아니다. 동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적 혹은 가정 및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경우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이 사용하도록 설치한 복사기에서 이루어지는 복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적이용인 경우에 복제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개인적 혹은 가정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적고, 또 그러한 이용을 일일이 규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용자가 복제물을 제작하여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사서가 복제물을 제작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비영리 목적이라는 하나 '개인적이거나 가정 및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해당하는 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 예를 들어 이용자가 기증한 일기, 직접 쓴 원고 등을 기증에 의하여 수집하게 될 경우 그 자체는 저작권법과 무관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대출 및 복제 서비스할 경우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제5항은 미공표 저작물을 도서관에 기증한 경우 별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도서관에서 미공표 저작물 기증시에 기증자가 대출 및 복제서비스 등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출판된 저작물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자료의 보존

도서관은 자료 보존 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소장 자료를 복제하였다. 전통적으로는 마이크로 필름의 제작이나 신문자료의 축쇄본 제작 등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디지털 형태로 보존용 복제물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훼손된 자료를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매체 혹은 기존의 매체를 사용하여 복제하는 것도 보존을 위한 복제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 새로운 기기에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매체전환형 복제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형태로 보존용 복제물을 만들 경우 대상이 되는 자료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보존용이라고 하더라도 복제물을 만들 수 없다(저작권법 제31조 제4항). 이것은 도서관이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구입하여 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귀중한 자료이거나 훼손이 쉽게 일어 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본을 보존용으로 두고 대신 복제물을 열람이나 대출에 활용하는 것은 보존을 위한 복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자료를 2부 구입하여 1부는 보존용 1부는 열람용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불법적인 저작물임을 알고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저작권법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유의해야 한다.

3) 자료의 처분

도서관은 특정 자료가 더 이상 장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매각, 기증, 교환, 폐기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던지 그것은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더 이상 저작자는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저작권법 제20조). 이것을 소위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of right)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고 한다.

즉,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서점에서 구매하거나 저자로부터 기증을 받는 방식으로 자료를 입수한다.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료란 곧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출판사가 저작물을 출판한 후 판매를 위하여 제공한 복제물들이다. 이렇게 판매된 자료를 도서관이 구입한 후 누군가에게 기증을 하던지 다시 판매하던지, 소각을 하던지 그것은 도서관의 자유이다.

2.1.2 자료의 열람 및 대출

1) 열람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자료 열람서비스 및 대출은 그 자체로는 저작권과 무관한 행위이다. 그런데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자료를 열람하거나 자료를 대출하여 복제나 전송의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그에 대하여 도서관이나 사서가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제31조 제7항은 도서관 면책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형태의 복제 전송 서비스의 경우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와 도서관 직원 교육, 컴퓨터에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도서관이 디지털로 복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취해야하는 조치이지, 도서관 자료를 열람 중인 이용자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복제를 제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열람하고 있던 자료를 이용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대출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복제하여 이용한다고 해서 이에 대해 도서관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단,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도서관 자료를 열람하다가 필요한 경우 도서관 열람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이 관리하는 복사기기를 사용하여 복제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실제로는 이용자가 복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서가 행하는 복제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용자가 복제를 요구할 경우 그 목적이 연구 및 학습용이라면 제한된 부분을 1부 복제하여 줄 수 있다. 도서관의 사서는 이러한 복제를 모두 직접 해주기 어려우므로 카드복제기기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직접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직접 하는 복제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DVD 등의 영상저작물을 도서관 내에서 개인 혹은 2~3인 정도의 소규모 열람실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단순한 열람인지 아니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만일 이러한 시청 행위가 공연에 포함된다면 도서관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8항에 의거하여 발행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저작물일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고 사용해야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위의 시청행위가 공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도서관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이용자에게 자유롭게 열람 서비스할 수 있다.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의 3).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1인이나 2~3인을 불특정 다수나 특정 다수라고 생각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노래연습장에서의 이용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것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2~3인석에서의 시청 서비스도 공연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영화배급협회(구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사용료 징수 규정에 개인열람석이나 2~3인 열람석에서의 시청에 대한 징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볼 때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사용료징수규정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개인열람석에 대한 공연사용료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한국영화배급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제8조 (도서관 등에서의 공연)

① 도서관 시설에서 협회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영상저작물에 한함)을 공연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집단상영(단체관람) 시

(단위: 원/월)

좌석 수	상영 횟수		
	1~5회	6~10회	11회~
50이하	30,000	60,000	90,000
50~100	45,000	75,000	105,000
101~200	60,000	90,000	120,000
201~300	75,000	105,000	135,000
301~400	90,000	120,000	150,000
401~	105,000	135,000	165,000

비고1) 행정구역상 거주인원 1만 명 이하의 읍·면이나 도서·벽지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2. 도서관 공연목적 구입 시

(판매용 영상저작물 가격 × 3) × 최소구매수량

비고1) 이 호에 의하여 도서관 전용영상으로 구입하는 경우 제1호의 사용료는 면제된다.

비고2) 최소구매수량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서관의 규모와 이용실태를 고려한다.

3.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목적 공연 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제14조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도서관 이외에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제8호의 시설에서 협회가 관리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영상저작물에 한함)을 공연하는 경우의 사용료에 관하여 준용한다.

2) 대출

저작권법 제20조 배포권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더 이상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출판되어 서점 등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 저작물을 구매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였을 경우 그 저작물을 물리적으로 소유한 자는 이를 판매, 기증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대여 등의 방법으로 재배포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21조는 저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를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즉, 대여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서관대여점 등에서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해 주는 것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는 대여권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 소장된 판매용 음악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대여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여권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도서관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도서관이 이 자료들을 대출한다고 해서 대여권이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도서관은 그 이용자의 목적이 어떠한가를 불문하고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자료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이거나 자료를 대출하여 장기적으로 특정 장소에 두고 이용하거나 특정 단체와 계약을 맺고 자료를 대출하는 서비스 등도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서비스는 저작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도서관의 대출서비스 규정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상호대차

상호대차서비스는 도서관간 협력의 하나로 전통적으로는 우편이나 FAX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통신기기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간에 주고 받는 형식으로 상호대차가 가능해졌다.

국내 저작권법 제31조에는 상호대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제31조 제1항 제3호는 절판 및 그에 준하는 수준의 구하기 어려운 자료에 대한 도서관간 복제에 대한 규정이다. 상호대차가 절판 및 그에 준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31조 제1항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이용자 요구에 따라 복제 후 1인 1부에 제공하는 규정인데 이용자의 요구가 반드시 자관 이용자의 요구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바, 상호대차에 따른 복제를 이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31조 제1항 제1호나 제3호의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상호대차와 관련된 조항으로 제31조 제3항은 도서관이 보관된 도서를 디지털로 복제할 수 있고 다른 도서관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판매용으로 발행된 자료의 경우 발행후 5년이 지나야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자료를 전송받은 도서관은 해당 자료를 도서관 내에서 열람하거나 출력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즉, 전송받은 자료를 이용자가 사용 중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USB 등에 저장할 수 없다. 또한 도서관간 전송 및 출력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비매용 자료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을 해당 자료의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규정은 사실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디지털화한 후 도서관간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상호대차에 의한 도서관간 복제물 제공과는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제31조 제3항은 이용자 요구가 없더라도 디지털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규정이라면 상호대차는 이용자 요구가 있을 경우 복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상호대차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규정이 어느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메일이나 Ariel 등 디지털 네트워크 방식으로 상호대차가 이루어지면서부터였다. Ariel은 도서 등의 자료를 스캔한 뒤 이 시스템이 설치된 다른 도서관의 단말기 혹은 이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외부의 이용자에게 스캔한 파일을 보낼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한 원문배달서비스용 프로그램이다.

Ariel 시스템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스캔한 파일을 보내는 것은 디지털 복제물 제공을 허용하지 않는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과 도서관간 전송으로 한정된 제31조 제3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도서관 내에 Ariel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해당 자료를 화면으로 보고, 출력하는 경우 제31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판매용으로 발행된

자료에 대해서는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가능하며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상호대차에서 빈번히 요구되는 최신 자료에 대한 서비스가 불가능하며, 디지털도서관 구축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보상금이 상호대차에 적용된다는 불합리함도 따른다.

한편, Ariel을 통한 디지털 파일을 전달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과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정의 10). 여기서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정의 32). 위의 Ariel을 통한 파일의 전달은 해당 단말기를 이용하는 1인에게 보내지는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나 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물론 일부 의견으로는 불특정 1인에게 연속하여 디지털 자료를 전달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송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측면에서 전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Ariel을 통한 디지털 파일의 전송은 사실 저작권법 제31조 제3항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Ariel을 통한 상호대차를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이 규정은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이 경우 관간전송에 의하여 복제·전송 받은 도서 등을 포함)를 사용하여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제공해줄 수 없다. Ariel을 통하여 사서가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디지털 형태로 파일을 제공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면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1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적용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에게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Ariel을 통해 전달 받은 자료를 출력하는 것은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 보상금은 대량의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 및 그에 따른 도서관간 전송을 예상하여 부과한 것으로 개별적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Ariel 서비스에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만일 출력물을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Ariel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종전에 면책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우편물을 통한 상호대차 서비스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형태이다. 이에 대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보상금을 부과하려고 하였던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현재의 저작권법 제31조는 상호대차 특히 Ariel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상호대차 서비스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된 규정을 이리저리 적용해서 제31조의 면책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이 입장의 차이에 따라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복사전송저작권협회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Ariel 등 도서관간 전송방식의 상호대차일 경우 도서관 간에 디지털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최종 이용자에게는 이를 출력하여 제공하도록 협정을 맺어 서비스하고 있다.

2.1.3 홈페이지 관리 및 온라인 서비스

관중을 불문하고 현대의 거의 모든 도서관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림파일이나 글꼴 등을 사용하게 된다. 그림 파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면 이것을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것은 복제, 전송에 해당하므로 CCL 등의 라이선스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이용하여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홈페이지 제작을 위하여 외부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문제를 31조와 관련지을 수는 없다.

글꼴의 경우 그 자체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 글꼴을 표현해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물이다. 따라서 홈페이지 제작시 그 글꼴 프로그램을 복제할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서관의 온라인 서비스는 온라인 전송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디지털화의 문제, 온라인 자료의 스크랩, 웹저작물 다운로드, 이메일을 이용한 서비스, 컴퓨터프로그램 사용 등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도서관의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기존의 온라인 자료를 복제하여 이메일이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송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관외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이다.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위하여 소장한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제3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가능하지만 해당 자료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을 경우 도서관은 저작권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도서관의 온라인 서비스 중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자료를 선별하여 스크랩 하거나 자관의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는 경우도 많다. 개인적인 이용을 위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지만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목적으로 자료를 출력하여 스크랩하거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용허락이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2 관종별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2.2.1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다른 관종과 달리 학교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는 도서관이다. 앞서 언급한 도서관의 업무에 따른 저작권 문제와 더불어 이 두 유형의 도서관은 교육자와 학생들의 다양한 자료 요청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자료나 비도서자료의 대출 요청, 복제물 제공 요청, 학생 수 만큼 복제물을 요청하는 것, 수업에 필요한 동영상 자료를 대출하여 상영하는 것, 전송서비스에 대한 요청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25조 제2항은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할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학교에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각종 평생교육기관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현재 보상금은 <표 6>과 같다(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17호(2011. 4. 28)).

그런데 학교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이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업목적용 복제를 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되는지는 모호하다. 만일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도 학교라고 볼 경우 도서관은 수업에 필요한 경우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학교”는 실제로 수업을 행하는 교원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수업과 관계없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납부자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대학교	저작권법상 복제·배포·전송·방송·공연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문: A4 1쪽 분량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이미지: 1건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p>*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p>	<p>종량방식 기준에 기초하여 수량단위와 납부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되, 포괄산정에 따른 비용절감과 연차별 조정계수(2014년까지 할인을 감안하여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다음을 참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대 1,879원('11)~3,132원('15) 전문대 1,704원('11)~2,840원('15) 원격대 1,610원('11)~2,684원('15) 일반대 1,879원('11)~3,132원('15) 전문대 1,704원('11)~2,840원('15) 원격대 1,610원('11)~2,684원('15)

* 수업 목적 보상금 제도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여 조기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가 2013년 11월 28일 대학교와 권리자단체 간에 역사적인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들 간에 가장 큰 쟁점이었던 포괄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부담액은 현 기준인 학생 1인당 연 3,132원(일반대 기준)에서 일반대 1,300원(전문대 1,200원, 원격대 1,100원)으로 대폭 인하되었다. 2014년 이후부터 적용할 보상금 기준은 협회와 대학협의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인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3.11.28.)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도입 합의-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대학 수업에서 자유롭게 저작물 이용 가능-”

또한 제25조 제2항은 실제 수업을 하는 주체인 교사가 모든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복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교사가 복제의 주체인 한 학생을 시켜서 복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오승중 2013). 그러나 교사가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서가 교육목적용 복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 조항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복제나 전송의 주체를 교사나 교수 등 교원과 대학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 도서관이 복제나 전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와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이 대학 및 학교 내 기관이므로 당연히 복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은 수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교육자에게 도서관 자료의 복제, 배포, 공연, 전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⑩항 생략

2.2.2 공공도서관

최근 공공도서관은 구연동화, 영상물 상영, 독서지도, 전시 등의 경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중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구연동화나 영상물 상영은 저작권법 제29조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및 방송의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저작권법 제29조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방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연동화는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과 관련 있다. 저작권법상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행위는 공연 중 구연에 해당된다. 제1항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것,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공연의 관중이나 제3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 실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공연동화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도서관에서 영상물을 상영하는 것은 제2항과 관련된다.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는다면 영리 목적이라도 공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공연권을 제한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제시된 예외규정은 영리성을 가진 업소에서의 공연(시행령 제11조 1~7호)과 비영리 기관에서의 공연(시행령 제11조 8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영리 기관이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청소년수련관, 구민회관 등 사회부조나 교육적 성격을 가진 공익을 위한 기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이라도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물을 공연하는 것은 공연권 제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서관은 판매용 영상물의 경우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고 상영할 수 있다.

2.2.3 장애인도서관

저작권법 제33조 제1항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모든 도서관은 공표된 저작물일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도서를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시설 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은 비영리 목적일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 및 배포, 전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점자도서관이 포함된다(저작권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따라서 녹음을 통한 복제물 제작은 모든 도서관이 아니라 점자도서관에서만 가능하다. 시각장애인실이 있는 공공도서관이 저작권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점자도서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설치 및 운영기준 부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녹음은 복지정책 등의 공공성을 위하여 저작권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재산적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두고 있는 규정이다.

또한 저작권법 제33조의 2에서는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서도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하여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비영리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시설 중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3항)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의 시행령에서 언급한 시설에 포함되는 장애인 도서관이라면 비영리 목적으로 공표된 자료의 경우 음성 및 음향을 자막으로 처리하여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할 수 있을 것이다.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 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수화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도서관 업무에 따른 저작권 질의응답

- 3.1 장서관리
- 3.2 열람
- 3.3 이용자 요구에 의한 복제
- 3.4 대출
- 3.5 상호대차
- 3.6 교사수업지원
- 3.7 문화프로그램
- 3.8 온라인서비스
- 3.9 콘텐츠 제작
- 3.10 홈페이지 관리
- 3.11 기타

3.1 장서관리

»» 질문 1

훼손된 도서 표지를 다른 표지로 제본할 경우

훼손된 도서의 표지를 다른 하드커버로 제본하면 원본 도서와 외형이 바뀌게 된다. 이러한 책으로 서비스해도 되는가?

서비스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도서의 표지는 그 창작성에 따라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저작권이 해당 표지를 창작한 자에게 부여될 것이다. 이 경우 표지는 도서의 본문에 표현된 어문저작물과 별도의 저작물이다. 위 질문상황에서 만일 표지가 창작성이 있는 미술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폐기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것이므로 복제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 또한 표지를 훼손하거나 훼손된 표지 위에 하드커버를 씌운다 하더라도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질문 2

미간행 자료를 수집 제공할 경우

출판되지 않은 자료를 도서관에서 수집하여 제공할 때 특별히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판되지 않은 자료는 미공표저작물이다. 미공표저작물을 도서관에서 복제 및 배포할 경우 공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 즉, 공연, 전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그러나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11조 제5항). 이에 따라 출판되지 않은 미공표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 서비스도 다른 저작물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질문 3

공중파 TV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서비스 할 경우

도서관이 공중파 TV를 통해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녹화한 뒤 이용자들에게 이용을 시키는 것이 저작권에 위배되는가? 교사가 TV 프로그램을 녹화한 테이프를 도서관에 제공하였을 경우 도서관 장서에 포함시켜도 되는가?

위배된다.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 또는 '가정 및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0조). 따라서 사서이든 교사이든 TV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혹은 집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질문상황은 두 경우 모두 비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기는 했지만, 그 복제물을 도서관에 기증할 경우 '가정 및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의 두 경우 모두 제30조에서 정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TV 프로그램 복제물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복제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 질문 4

학위논문 저자가 열람서비스 제외 요청을 할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학위논문은 전자도서관 및 모든 열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였을 경우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대로 수행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열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도서관은 법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 조직, 보존, 열람,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해당 자료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입수하였다면 저작권자라고 하여 열람 혹은 대출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권리는 없다. 따라서 위의 질문은 저작권법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개별 도서관이 정한 열람 및 대출 정책과 관련한 문제이다.

한편, 전자도서관을 통한 자료의 열람일 경우 곧 디지털 복제와 전송이라는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와 관련된 행위와 직결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도서를 디지털로 복제하고, 전송에 따른 열람이 가능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도서관에 부여한 이용권이다. 이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저작물의 사용에 대하여 열람 제외 등의 요청을 할 권리는 없다.

»» 질문 5

딸림자료의 복제 후 대출

여러 권으로 된 책에 CD나 카세트 테이프가 1개만 부록으로 있는 경우 CD나 카세트 테이프를 책 수만큼 복제하여 대출해주어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위반된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2호는 도서관이 그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나 비도서 자료를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장공간의 부족으로 마이크로필름이나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는 경우이거나 새로운 기기에서 볼 수 있도록 매체를 변경하는 복제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위의 질문상황은 대출을 위한 복제이므로 제31조 제1항 2호에 근거하여 복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필요한 수 만큼 구매를 통하여 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질문 6

보존용 CD, DVD 대체본 복제

보존을 위하여(파손, 오염, 훼손을 대비하여) CD, DVD 대체본 복제를 할 수 있는가? 발행시점에 따라 복제 가능성이 달라지는가?

복제할 수 없다.

도서관은 자체 보존을 위하여 그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나 비도서 자료를 전체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지털 복제도 가능하다. 단, 복제하려는 자료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라면 보존용이라도 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자체 보존이 필요한 경우는 예를 들면 장소가 협소하여 소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소 복제하는 경우, 자료가 손상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새로운 기기에서 볼 수 있도록 매체변경용 복제를 하는 경우 등이다.

위의 질문상황에서처럼 훼손이나 오염에 대처하기 위하여 열람용과 보존용을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자체 보존용 복제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러한 해석이 저작물의 발행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질문 7

손상된 자료의 복제본 제작

타도서관이 출판된 도서, 정기간행물, 음반이 손상, 망실되었다고 복제물을 요청하였을 때 이를 제공할 수 있는가? 만일 훼손된 도서를 중고서점에서 살 수 있는데, 그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훨씬 고가인 경우라면 복제본을 제공할 수 있는가?

제공할 수 있다.

위의 질문에서 복제하려는 자료를 일반적인 유통경로(중고서점을 통하여 정상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 포함)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다면, 구매를 통하여 입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자료가 절판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예를 들면 정당한 가격으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에 요청하여 1부의 복제본을 제공받을 수 있다(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3호). 단,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다.

»» 질문 8

도서관에서 개인 소장 자료를 수업자료로 지정할 경우

대학의 교수가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동영상물을 원본 훼손을 염려하여 복사본을 제작한 뒤 이를 도서관에 맡기고 수업자료로 지정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단, 공중이 사용하는 복사기기에서는 복제할 수 없다. 위의 질문상황에서 교수가 동영상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복사기기로 복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료를 도서관 자료로 기증한 뒤 수업지정자료로 활용한다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작권법 제124조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제124조 제2항). 따라서 위의 질문에서 교수가 개인 및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를 벗어난 이용을 목적으로 복제했을 경우 사적복제의 범위를 넘어선 복제물로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을 도서관이 대출 등을 목적으로 기증받는 것은 저작권법 제124조 제2항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교수가 자신의 특정 수업을 위하여 영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복제물을 만들었고, 이 복제물을 도서관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만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리를 대행해 준다면 이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학교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 규정에 따라 가능한 행위라고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수업목적용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질문 9

보존용 미간행 자료 복제

도서관이 손상된 미간행 사진, 음반, 원고를 보다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복제할 수 있는가?

복제할 수 있다.

도서관은 자체 보존을 위하여 그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나 비도서 자료를 전체 복제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2호). 이 경우 디지털 복제도 가능하다. 단, 해당 자료가 디지털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면 디지털로 복제할 수 없고, 판매되고 있는 해당 디지털 자료를 구매하여 보존해야 한다.

자체 보존이 필요한 경우는 예를 들면 장소가 협소하여 소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소 복제하는 경우, 자료가 손상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새로운 기기에서 볼 수 있도록 매체변경용 복제를 하는 경우 등이다.

위의 질문상황은 미간행 저작물이 훼손이 진행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으로 제31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복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디지털형태로 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질문 10

개인용과 강사용으로 구분된 DVD를 구매할 경우

개인용과 강사용으로 구분하여 판매되고 있는 DVD가 있을 경우 도서관은 어떤 것을 구매하여 대출서비스를 해야 하는가?

둘 다 가능하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작성의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정하고 있을 뿐 이용자가 어떤 저작물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도서관의 자료대출 서비스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근거하여 대여권이 미치지 않는 이용행위이다.

따라서 위의 질문상황에서 어떤 용도의 DVD를 구매하는가는 도서관의 수서정책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일 뿐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아니다.

»» 질문 11

도서관이 구매한 전자자원의 기증 및 판매

합법적으로 구매한 전자자원일 경우(학술지 논문 같은)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거하여 기증 또는 팔 수 있는가? 고등학교 도서관 같은 비영리 도서관이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를 초등학교에 주어도 되는가?

가능하다.

학술지 등의 전자자원은 일반적으로 해당 전자자원을 제공하는 기관의 서버에 이용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접근할 수 있는 허가를 얻는 방식으로 계약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원이라면 기증이나 판매가 가능한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CD등에 수록된 전자자원을 구매하여 도서관이 소장한 경우라면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 저작물을 기증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이다.

»» 질문 12

타 도서관 원문 DB를 출력하여 제본, 소장할 경우

다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원문 DB에서 학위논문을 출력·제본하여 소장할 수 있는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절판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디지털 형태로 제공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3호).

학위논문은 일반적으로 출판되지 않으므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출판되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도서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학위논문의 복제물을 그 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다.

위의 질문상황은 다른 도서관에 학위논문의 복제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서관에서 디지털화해 놓은 학위논문을 저작권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관간전송 받은 후 출력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라면 관간전송 및 출력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관간전송 후 출력은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복제이므로 그 분량이 일부분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특정 학위논문의 전체 복제물이 필요할 경우 다른 도서관에 요구하여 인쇄본 형태의 복제물을 제공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학위논문의 저작권자가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적용하고 있을 경우 이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복제가 가능하므로 출력 및 제본하여 소장할 수 있다.

3.2 열람

»» 질문 13

도서관내 시설을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열람할 경우

도서관내에서 이용자가 도서관 PC를 이용하여 저작권에 위반되는 디지털 저작물을 열람할 경우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열람자의 불법적인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열람자에게 있다.

저작권법 제31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13조는 도서관이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첫째,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로서 도서관 이용자가 열람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 조치, 도서관 등의 이용자 외에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과 셋째,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위의 규정은 도서관 내의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복제와 전송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위의 질문상황은 제31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인터넷에 있는 불법저작물을 열람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이용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도서관에 부여하고 있는 책임 관련 규정은 없다.

» 질문 14

도서관 음원자료를 이용자 개인설비에 저장하려 할 경우

도서관 이용자가 PC에서 음원자료를 개인 휴대폰이나 USB에 저장해갈 수 있는가? 이때 사서는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

가능하다.

휴대폰이나 USB에 담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이다. 인터넷상에 있는 음원을 구매하여 휴대폰이나 USB에 담아가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다. 만일 해당 음원을 구매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음원이 아닐 경우라도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을 적용해볼 수 있다. 이 조항은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일 경우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해당 음원자료가 도서관이 음원제공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디지털화해 놓은 음원일 경우 이를 이용자가 USB에 복제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복제물을 제공할 때 디지털 형태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사서는 음원자료를 듣는 형태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야한다.

»» 질문 15

도서관 자료를 사진촬영 할 경우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자료를 열람하다가 필요한 부분을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사진촬영해도 되는가? 도서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가능하다.

도서 등의 저작물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이 이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제가 여러 사람이 사용하도록 설치된 복사기기 예를 들면 복사전문점 등의 기기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경우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위의 질문상황에서 복제는 개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공중용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도서관이 이에 대하여 특별히 대처할 필요는 없다.

»» 질문 16

복수 이용자가 동시에 영상물 열람을 할 경우

2~3명의 학생이 도서관에서 빌린 DVD를 같이 시청하고 싶어 한다.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인가?

이견이 존재한다.

도서관이 개인열람석 혹은 2~3인 열람석에서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만일 이러한 시청 행위가 공연에 포함된다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8항에 의거하여 발행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저작물일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고 사용해야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위의 시청행위가 공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도서관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이용자에게 자유롭게 서비스할 수 있다.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의 3).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1인이나 2~3인을 불특정 다수나 특정 다수라고 생각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노래연습장에서의 이용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것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2~3인석에서의 시청 서비스도 공연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국영화배급협회(구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사용료징수규정에 개인열람석이나 2~3인 열람석에서의 시청에 대한 징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볼 때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사용료징수규정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개인열람석에 대한 공연사용료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질문 17

공공도서관내 영상 DVD를 열람할 경우

도서관은 학생들이 공공도서관 개인 열람실에서 DVD를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수 있는가?

이견이 존재한다.

이 질문은 개인열람실에서 DVD 시청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포함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진다. 만일 이 행위가 '공연'에 포함된다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8항에 따라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해당 DVD를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공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발행시점과 무관하게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제17조)를 부여하고 있다.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의 3).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1인이 개인열람실에서 DVD를 시청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나 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연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 노래연습장에서의 이용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것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DVD 시청은 노래연습장에서의 이용과 같은 공연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국영화배급협회(구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사용료징수규정에 개인열람실에서 시청에 대한 징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볼 때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사용료징수규정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개인열람실에 대한 공연 사용료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 이용자 요구에 의한 복제

» 질문 18

집합 저작물에서 한 편을 복제하여 제공할 경우

문집같은 집합저작물에 있는 작품 한편을 복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백과사전, 회화집, 사전, 문학전집, 판례집, 잡지, 전화번호부 등이 편집저작물에 속하며 이들 저작물에 포함된 개별 소재가 저작물인가에 무관하게 소재의 선택과 배열 및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서 성립된다. 위의 질문상황에서 문집은 개별 소재가 저작물이면서 소재의 선택과 배열 및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은 도서관은 그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다. 위의 질문 상황은 제31조 제1항의 요건 중 문집이라는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 1편이 도서 등의 '일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일부분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저작물을 통째로 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잡지나 문집 등과 같은 편집저작물은 여기에 수록된 기사나 작품이 그 자체로서 독립된 저작물이지만 잡지나 문집 또한 편집저작물로서 독립된 하나의 저작물이므로 여기에 수록된 작품 1편은 도서 등의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질문이 제31조 제1항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도서관은 문집의 작품 1편의 복제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질문 19

도서관 설비를 통해 이용자가 저장, 복제를 할 경우

도서관 자료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로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소설 총서를 전체 복사하였을 때, 이와 같은 저작권 위반 사항에 대해 도서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책임지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 등이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것은 복제의 주체가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체가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것은 도서관 직원이 직접 복제하는 것과 더불어 그 직원의 지시감독 하에 이용자가 복제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이용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복제를 요청하였을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도서관 직원의 감독 하에 있는 복사기로 이용자가 직접 복사하더라도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위의 질문상황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복제하였으므로 제31조 제1항 1호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도서관 이용자가 복제 행위의 주체이므로 도서관이 위 행위에 공동으로 관여하지 않는 한, 해당 복제 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도서관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관 내에 있는 복사기를 사용하여 일부분만 복사할 있다는 것을 교육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경고표지를 부착할 필요도 있다.

»» 질문 20

도서관 스캐너를 통한 자료 복제에 대한 도서관 책임

도서관에서 자료열람실에 이용자들이 인쇄자료를 스캔한 파일을 USB에 담아갈 수 있도록 스캐너를 설치하여 서비스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문제가 있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1호는 도서관이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는데, 단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자료열람실에 설치된 복사기에서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스스로 복사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도서관 직원의 지시 감독하에 이루어져야만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위의 질문 상황에서 스캐너는 도서관 직원이 관리 감독하는 것이므로 복사기에서 이루어지는 복제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스캐너를 이용할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제31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위 규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 및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들이 해당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단 공중이 사용하도록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다.

위의 질문상황에서 스캐너는 도서관 이용자라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둔 것으로 제30조의 단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의 질문상황이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질문 21

카세트 테이프 자료를 CD로 변환 요청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음악 카세트 테이프를 CD로 변환하여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을 때 이와 같은 요청을 수락할 수 있는가?

수락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도서관이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는데, 단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위의 질문 상황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CD로 변환하는 것은 디지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이며, 도서 등의 '일부분' 복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에 근거하여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대출하여 자신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복제할 수는 있다.

»» 질문 22

이용자가 인쇄자료를 스캔요청 하였을 경우

문헌복사서비스시에 인쇄화면의 가독성이 떨어져 고화질로 자료를 스캔한 파일을 요구하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이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을 제공할 수 있는가?

제공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도서관은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는데, 단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위의 질문 상황에서 스캔한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디지털 형태로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 질문 23

대학 도서관내 복사실에서의 복사에 대한 책임

대학도서관내의 복사실이 학교 당국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 불법적인 복사로 인한 법적 책임은 학교당국, 도서관, 복사업자 중 누구에게 있는가?

복사업자에게 있다.

복사업자가 복제 행위의 주체이므로 도서관은 해당 행위에 공동으로 관여하지 않는 한 해당 복제 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도서관과 계약을 맺은 복사업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도서관은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를 2가지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좁은 의미의 공동불법 행위로서 민법에서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760조 제1항)고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교사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서 민법에서는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제760조 제3항)고 하고 있다. 교사란 지시, 설득, 유도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결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고, 방조란 물심양면의 지원을 통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도서관이 공동으로 또는 교사나 방조에 의해 다른 사람의 복제 행위에 관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 질문 24

도서관이 이용자를 대신하여 복사를 하였을 경우

도서관이 이용자를 대신하여 복사할 경우 저작권법 적용은 도서관으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용자로 적용되는 것인가?

도서관으로 적용된다.

이용자를 대신하여 복사한다는 것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복사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 제31조 제1항 제1호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규정 중 이용자 요청에 의한 복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다.

»» 질문 25

도서관 자료를 복사 제공할 경우 국내외 저작권 적용 차이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외국 자료와 국내 자료에 저작권법 적용사항이 달리 적용되는가?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3조는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제3조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며(동조 제1항),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그러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저작권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고(동조 제3항),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동조 제4항)고 정하고 있다.

베른협약 등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의 기본 원칙 중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의 원칙 즉, 보호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게 최소한 자국민과 같은 대우를 부여하는 원칙에 따라 상호 국간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외국자료는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자료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질문 26

도서관 설비로 이용자가 녹음, 녹화하였을 경우 도서관 책임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아날로그 음반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도서관내 장비를 이용하여 녹음·녹화할 수 있는가?

녹음·녹화해서는 안된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도서관은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는데, 단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복제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도서관 직원이지만 그 관리 하에 있는 복제기에 의하여 이용자가 복제하는 것도 도서관 직원이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질문상황에서 복제하고자 하는 음악 및 영상저작물이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며, 그 복제의 목적이 조사, 연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해서는 안된다. 만일 위의 질문상황이 앞서 언급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라면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도서관 서비스 중 녹음 및 녹화를 위한 기기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형태의 복제가 이루어지므로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도서관의 녹음 및 녹화기기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것이므로 복제의 목적이 비영리였고, 그 복제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제30조에 근거하여 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다.

»» 질문 27

대학도서관에서 휴학생이 복사를 하는 경우

대학도서관에서 휴학생을 자관 이용자로 보고 도서관 자료를 복사할 있도록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이용자 요구가 있거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도서관에서 절판된 자료를 요구할 때 그 도서관에 보관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은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으로 정하고 전문도서관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저작물을 보존 또는 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한 제31조의 적용이 가능한 시설이다. 즉, 제31조의 적용이 가능한 시설은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봉사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넓은 공중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유형이 공공도서관이다.

또한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이용자가 복제물을 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조사와 연구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한정을 짓고 있지만 그 이용자가 자관에 등록된 이용자인지 그 외의 이용자인지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복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휴학생 혹은 지역주민, 타 도서관 이용자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재학생으로 한정할 것인지는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도서관의 복제서비스 정책의 문제이다.

»» 질문 28

사진집에서의 사진 복사 적정 분량

도서관 이용자가 사진집에서 사진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한다. 사진집에서 사진을 복사하여 제공해줄 수 있는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고 복사할 수 있는 적절한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

제공해줄 수 있다.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도서관은 그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를 사용하여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는 없다.

위의 질문상황에서 사진집이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면 복사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분량은 '일부분'이다. 저작권법은 일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사진저작물처럼 일부분을 복제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는 저작물 전체를 복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사진집의 경우 그에 수록된 전체 사진 중 어느 정도 분량을 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도서관이 복제할 수 있는 분량을 '일부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저작물을 통째로 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일부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중앙도서관복제업무규정』 제6조에서는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복제(1/3)에 한하며”로 정하고 있다. '일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1/3 규정은 다른 도서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진집의 1/3 이하에 해당하는 분량이라면,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일부분'에 포함되는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 질문 29

특정 기간 발행된 신문의 적정 복사 분량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특정 기간의 신문을 전부 복사해도 되는지 문의하였다.
신문의 복사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허용되는가?

1/3 이하 정도이다.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정하고 있다. 신문이나 잡지는 편집저작물이다. 위의 질문상황은 도서관에 소장된 신문자료를 이용자가 복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복제해 줄 수 있는 분량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도서관은 그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일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저작물을 통째로 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중앙도서관복제업무규정』 제6조에서는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복제(1/3)에 한하며”로 정하고 있다. '일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1/3규정은 다른 도서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잡지나 신문과 같은 편집저작물은 그 수록된 기사나 작품이 그 자체로서 독립된 저작물이지만 잡지나 신문 또한 편집저작물로서 독립된 하나의 저작물이므로 여기에 수록된 개별적인 기사들은 그 각각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문자료의 1/3이하에 해당하는 분량이라면,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일부분'에 포함되는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 질문 30

시집의 적정 복사 분량

시 같은 경우 어느 분량까지 복사를 해야 저작권에 위배가 되지 않는 것인가?
시집의 경우 복사할 수 있는 시의 수에 제한이 있는가?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정하고 있다. 시집은 편집저작물이다. 위의 질문상황은 도서관에 소장된 시집을 이용자가 복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복제해 줄 수 있는 분량의 문제이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도서관은 그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위의 질문상황에서 다른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시집이라는 편집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해줄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일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저작물을 통째로 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중앙도서관복제업무규정』 제6조에서는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복제(1/3)에 한하며”로 정하고 있다. '일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1/3규정은 다른 도서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집이나 시집 등의 편집저작물은 그 수록된 작품이 그 자체로서 독립된 저작물이지만 사진집이나 시집 또한 편집저작물로서 독립된 하나의 저작물이므로 여기에 수록된 개별적인 작품들은 그 각각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집의 1/3 이하에 해당하는 분량이라면,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일부분'에 포함되는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또한 시나 사진작품과 같이 저작물의 성질상 전부를 복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편의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질문 31

지도책의 적정 복사 분량

도서관 이용자가 지도책에서 지도를 복사하고 싶어 한다. 지도책에서 지도를 복사할 수 있는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고 복사할 수 있는 적절한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

1/3정도이다.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 등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을 도형저작물이라고 한다(저작권법 제4조). 도형저작물 중 지도는 창작성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지도는 약속된 기호로 육지, 산맥, 하천, 도로, 철도, 도시, 국가를 있는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어문저작물과 같은 정도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면이 많다. 다만, 지도에 사용되는 개별적인 소재를 기존의 지도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가 그리고 그 소재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가를 종합하여 지도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일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도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위의 질문상황에서 해당 지도가 창작성을 갖춘 도형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이용자가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복제를 요청하고, 해당 지도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을 경우 해당 지도책의 일부분을 복제하여 1부 제공해줄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일부분'이 어느정도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중앙도서관복제업무규정』 제6조에 따르면 부분복제를 1/3로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부분을 판단하여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

»» 질문 32

시각장애인 요청에 의한 도서관 자료 오디오 파일 변환

시각장애인의 요청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오디오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할 수 있는가? 또한 요청에 의해 변환한 오디오 파일을 도서관의 서버나 CD 등 저장매체에 저장해놓는 것은 불법인가?

점자도서관은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33조는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비영리 목적인 경우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33조 제2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점자도서관이 포함된다(저작권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녹음은 복지정책 등의 공공성을 위하여 저작권자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재산적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두고 있는 규정이다.

한편 시각장애인실이 있는 공공도서관이 저작권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점자도서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설치 및 운영기준 부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

변환한 오디오 파일의 저장은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저장할 수 있다. 설령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거하여 도서관은 보관된 도서 등을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어문저작물을 오디오 파일로 변경하여 저장할 수 있다. 다만 그 파일의 사용이 도서관 내에서 열람 또는 청취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이용자가 해당 파일을 USB 등의 매체에 저장하여 집으로 가지고 가거나 집에서 해당 파일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질문 33

도서관 구독 전자저널을 사서가 이용자에게 이메일 전송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전자저널, 학술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학술논문 파일을 사서가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자에게 메일로 제공해도 되는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저작권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도서관은 보관된 도서 등을 디지털화할 수 있지만 그것의 이용은 도서관 내와 다른 도서관 내에서의 열람과 출력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용자 요청에 의하여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디지털 형태로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위의 질문상황은 제31조에 근거하여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위의 질문은 전자저널과 학술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으로 해당 저작물 서비스 제공자와 관의 전송이나 이용자에게 대한 메일 제공 등이 가능하다는 계약사항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메일 제공 등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질문 34

절판된 자료를 전체 복사하는 경우

절판된 자료(도서, 음반)의 경우 이용자를 위하여 전체 복사해주어도 되는가?

복사해 줄 수 없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이용자 요구에 따라 그 도서관에 보관된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 복제하여 1인에게 1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없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절판된 자료에 대하여 이용자 요구가 있을 때 그 전체를 복제해주는 것은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다.

다만, 다른 도서관에서 절판된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는 전체 복제하여 아날로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3.4 대출

» 질문 35

비도서 자료의 대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음악 CD, 낭독 CD, 게임 CD, DVD 등 시청각자료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대출해주는 것이 가능한가? 시청각자료 내부에 '복제도 대출도 불가'라는 경고문이 있어도 대출해 줄 수 있나? 딸림자료일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가? 또한 악보, 잡지, 지도, 전자자원 등의 자료도 대출해줄 수 있는가? 대출해줄 수 있는 자료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가?

모든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자료 수 제한은 저작권법과 무관하다.

도서관이 출판된 자료를 구입이나 기증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였다면 도서 자료 이외의 자료들 흔히 도서관에서 비도서자료라고 불리는 자료들도 모두 대출이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20조 배포권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더 이상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21조는 저작자에게 판매용 음반 및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즉, 대여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서대여점 등에서 판매용 음반 및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해 주는 것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는 대여권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 이러한 자료를 대출해주는 것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대여권이 적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도서관은 판매용 음반 및 프로그램, 악보, 지도 등의 비도서 자료를 대출해줄 수 있다. 이 자료가 딸림자료 형태로 입수되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대출자료의 수에 대한 제한 또한 저작권법과 무관하다. 이는 단지 도서관의 대출서비스 정책의 문제일 뿐이다.

»» 질문 36

도서관 DVD나 CD를 이용자가 개인장비로 복사할 경우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CD나 DVD를 대출하여 복사하고 싶다고 할 때 도서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용자가 대출 후 개인장비로 복사를 할 경우 도서관이 법적 책임을 지는가?

복사할 수 있으며, 도서관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복제권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일 경우 제한된다.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일 경우 그렇지 않다. 사적이용인 경우에 복제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개인적 혹은 가정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적고, 또 그러한 이용을 일일이 규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대출한 CD나 DVD 복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가능하다고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개인장비를 사용하여 복제할 경우, 둘째 그 복제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셋째 그 복제물을 개인적 혹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즉, 소수의 동아리처럼 구성원들이 서로 친한 약 10인 이하 정도의 규모에서 사용할 경우이다.

위의 질문상황에서 이용자는 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복제할 수 있다.

»» 질문 37

이용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서비스할 경우

학부모가 우리 학교의 운동회와 소풍 등의 행사를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학교도서관에 기증하였다. 도서관은 이 자료를 도서관 내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상영하거나 대출해줄 수 있는가?

가능하다.

이 질문은 도서관에 소장된 미공표저작물을 일반적인 공표자료와 동일하게 열람 및 시청에 제공하거나 대출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제11조 공표권)를 가진다. 여기서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제2조의 25). 그런데, 저작권법 제11조의 5항은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의 질문 상황에서 동영상 자료의 저작자는 이를 촬영한 학부모이며, 이 저작물은 아직 위에서 정의한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공표자료인 것이다. 도서관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한 영상자료의 상영이나 대출은 곧 공표행위에 해당하지만, 제11조 5항에 의거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학부모가 학교도서관에서 본 자료를 기증한 동시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위 학교도서관은 기증받은 미공표 영상저작물을 시청에 제공하거나 대출해줄 수 있다.

» 질문 38

이용자가 도서관 도서를 녹음하여 청취할 경우

학생들이 학교도서관 소장자료를 대출하여 스스로 녹음하거나 오디오 파일로 만든 후 개인 MP3 플레이어에서 청취한 경우에 저작권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를 개인적 목적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 즉,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일 경우 그렇지 않다.

위의 질문 상황에서 학생이 도서관 소장자료를 대출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녹음하거나 오디오 파일로 만든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 또한 오디오 파일을 인터넷 상에 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MP3 플레이어에서 혼자 청취하였으므로 공중송신이나 공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30조에서 요구하는 조건 즉, 비영리 목적의 이용, 개인 혹은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복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위 상황은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 질문 39

이용자가 대출자료를 복사할 때 도서관의 법적 책임

이용자가 대출한 자료를 복사하는 것에 대하여 도서관이 관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안내가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대출한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도서관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자료 대출서비스를 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료이용에 대하여 안내할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은 이용자가 대출한 저작물을 합법적인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서관의 서비스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강제가 아니라 안내하는 수준에서 자료 복사와 관련된 저작권법의 규정을 알려준다면 사생활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 질문 40

학생이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웹에서 제공할 경우

학생이 학교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하여 복사한 뒤 스캐너를 이용하여 디지털파일로 변환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홈페이지에 해당 파일을 올려놓았다. 학교도서관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없다.

이 질문은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를 이용자가 복제 등의 방식으로 사용할 때 도서관 및 사서의 의무 또는 책임과 관련한 질문이다. 우선, 도서관은 이용자가 대출한 도서관 자료를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법상 그것을 강제하거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하여 제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위 질문 상황에서 학생이 대출한 자료를 개인적 혹은 가정용 스캐너를 사용하여 디지털 파일로 만든 것까지는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 합법적인 수준에서의 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홈페이지에 스캔한 파일을 올려놓은 것은 공중송신 중 '전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30조는 복제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지 전송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 만일 위의 복제가 학교의 수업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면 공표된 자료의 일부분을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학교교육 목적 등예의 이용 중 교육을 받는 자에게 허용된 복제 및 전송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5조의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위의 상황이 수업목적이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그 이용자에게 저작권법 규정을 설명하고 안내하여 불법적인 이용이 지속되지 않도록 안내할 수는 있다. 이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단순히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다.

» 질문 41

이용자가 인쇄자료를 PDF로 변환하여 저장할 경우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대출한 인쇄자료 전체를 JPG 혹은 PDF 형태의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것은 가능한가? 만일 이것이 저작권 침해라면 이 경우 도서관에도 책임이 있는가?

가능하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 질문은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를 이용자가 복제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의 문제와 그와 관련한 도서관의 책임에 대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일 경우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은 세 가지 조건 즉, 첫째 개인장비를 사용하여 복제할 경우, 둘째, 그 복제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셋째, 그 복제물을 개인적 혹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즉, 소수의 동아리처럼 구성원들이 서로 친한 약 10인 이하 정도의 규모에서 사용할 경우를 모두 충족할 경우 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복제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컴퓨터프로그램을 제외) 및 그 형태(인쇄자료와 비인쇄자료) 그리고 복제물의 형태는 문제되지 않는다.

위의 질문 상황에서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를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및 가정 혹은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할 경우 개인장비를 사용하여 JPG나 PDF 형태의 디지털 파일로 복제할 수 있다. 또한 대출한 자료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 질문 42

이용자가 대출 도서를 복사할 수 있는 분량

이용자가 도서를 대출한 다음 어느 정도 분량을 복사해야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용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용자가 DVD를 대출한 뒤 사본을 만들어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도서나 DVD 모두 전체 복사가 가능하다.

저작권법은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대출한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도서관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대출 서비스 한 후 이용자에게 불법적이지 않은 수준에서의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이든 유통기관을 통하여 구매한 자료이든 이용자는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규정에 의거하여 복제할 수 있다. 제30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일 경우 그렇지 않다. 즉,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복제기기를 통하여 대출한 도서나 DVD를 비영리적 목적으로 복제한 후 이를 개인적 혹은 가정 및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할 경우 전체 복제도 가능하다.

만일 복사전문점 등 공중이 사용하도록 제공되고 있는 복사기기에서 복제할 경우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복사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복사전송저작권협회가 개별 복사전문점과 일괄계약을 통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권리처리를 하고 있다.

» 질문 43

도서를 분할하여 전문을 복사할 경우 도서관 법적 책임

이용자가 도서를 대출하여 도서 전체를 한 번에 복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번에 걸쳐 대출한 후 여러 번 나누어 복사하여 결과적으로 저작물 전체를 복사하였다는 것을 도서관에서 알게 되었을 때 도서관에서도 저작권 위반 책임이 있는가?

책임이 없다.

이용자는 대출한 도서를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복제하였고, 복제물을 개인 혹은 가정의 범위 수준에서 사용할 경우 도서 전체를 복사할 수 있다.

만일 복사전문점 등 공중이 사용하도록 제공되고 있는 복사기기에서 복제할 경우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복사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복사전송저작권협회가 개별 복사전문점과 일괄계약을 통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권리처리를 하고 있다.

대출 후 이용자에 의한 불법적인 저작물 복제에 대하여 도서관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도서관은 대출한 도서가 이용자들에 의하여 저작권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질문 44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용자의 대출 요청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음악 CD를 대출하여 복제하였는데, 그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대리한 행위였음을 도서관이 알게 되었다. 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음악 CD를 계속해서 대출해줄 수 있는가?

대출해줄 수 있다.

이 질문은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도서관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다. 도서관은 소장자료가 대출된 이후에 이용자들에 의하여 그 자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일일이 제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저작권법은 대출된 자료의 불법적인 이용에 대하여 도서관에 책임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다만 도서관은 대출서비스 규정을 통하여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위의 질문상황은 저작권법 제30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복제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일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의 질문상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통하여 CD를 복제한 것 즉,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에 해당하므로 제30조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

»» 질문 45

단체관람을 위하여 영상물을 대출할 경우

몇 명의 학생들이 집에서 생일파티를 위하여 혹은 동호회나 학교 축제에서 상영하기 위하여 영상자료 대출을 요청한다. 도서관은 대출해줄 수 있는가?

대출이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17조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을 부여하고 있다. 공연은 저작물을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정의). 여기서 공중이란 불특정다수인(특정다수인을 포함한다)이다. 위의 질문 상황에서 생일파티에 참석한 학생들이나 동호회(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동호회는 제외)는 불특정다수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연권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적 시청을 위하여 영상자료를 대출해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축제에서 영상자료를 상영하는 것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연에 해당된다. 그런데 공연권은 특정한 경우에 제한된다.

저작권법 제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에 대한 공연권 제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예컨대 공연료, 기부금 모금 등)를 받지 않을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제29조 제1항). 또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제29조 제2항). 학교 축제에서 사용하려는 영상자료가 공표된 영상저작물이고, 공연에 대한 관람료 등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다면 비영리 목적의 공연으로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도서관은 해당 영상자료를 대출해줄 수 있다.

3.5 상호대차

»» 질문 46

도서관간 복제본을 제공할 경우

A 도서관이 계속하여 동일한 자료를 B 도서관에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위 질문상황은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복제물 제공이라고 판단된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서관은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제공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복제 가능한 부수와 분량을 정하고 있지만, 동일자료가 여러 명의 이용자에 의해 여러번 요청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도서관이 반복적으로 다른 도서관에 복제물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견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위의 질문 상황에서 A 도서관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B 도서관에 복제본을 요청을 했을 경우 그 이용자의 복제 요청 목적이 조사 및 연구용이었고, 요청된 자료가 공표된 자료일 경우(미공표 자료일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B 도서관은 자료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동일한 부분의 복제물을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은 '1인 1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질문 47

정보브로커가 도서관에 복제본을 상호대차로 요청할 경우

정보브로커가 상호대차를 통하여 그들 고객에게 복제본을 전달하려고 할 때 도서관은 이에 응할 수 있는가?

응할 수 없다.

도서관은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을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디지털 형태로 제공할 수는 없다. 만일 상호대차를 통하여 이용자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복제하여 타 도서관에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질문상황에서 정보브로커가 고객에게 복제본을 전달하려고 도서관에 복사를 요청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제31조 제1항 1호의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복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은 후에 하거나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을 근거로 복제서비스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 질문 48

미간행 자료를 복제하여 상호대차할 경우

A 도서관은 미간행 사진, 음반, 원고를 B 도서관에 한부 복제해줄 수 있는가?

몇가지 조건 하에서 복제가 가능하다.

이 질문은 미공표저작물을 전체 복제하여 타 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본 질문상황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복제가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에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 제3호는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도서관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단, 디지털 형태로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다. 위의 질문상황에서 A 도서관이 미간행 사진, 음반, 원고 등을 B 도서관에 한부 복제해 주기 전에 B 도서관의 복제 요청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요청대상이 되는 자료가 절판된 자료처럼 구하기 어려운 자료여야 한다. 위 질문상황의 경우 복제대상이 되는 자료가 미간행 자료로서 그 자료를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판단된다. 또한 복제대상이 되는 미간행 사진, 음반, 원고를 A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A 도서관은 위의 미간행 사진, 음반, 원고 1부를 복제하여 B 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복제물이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제31조 제1항 3호는 구하기 어려운 자료에 대한 도서관간 복제물 제공을 공표된 도서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질문상황에서 복제대상 자료가 미간행자료인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 질문 49

상호대차용으로 복제본을 제작할 경우

상호대차 요청이 자주 있을 것을 예상하여 미리 여분의 복제본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서관은 그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를 사용하여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는 없다. 이 규정은 첫째, 복제하는 도서관에 해당 자료가 보관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복제의 목적이 조사 또는 연구 등의 비영리적 목적이어야 하고, 셋째, 이용자가 그 복제를 요구해야 하며, 넷째, 공표된 도서일 것, 다섯째, 도서 등의 일부분 복제이어야 하고, 여섯째, 1인에게 1부만 제공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 질문상황은 세 번째 요건 즉, 이용자가 복제를 요청해야한다는 조건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복제물을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의 질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저작권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 질문 50

손실된 예술작품을 위하여 복제본을 제작할 경우

- A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나 그림 등의 예술작품을 잃어버렸을 경우
- B 도서관에 요청하여 해당 예술작품의 복제본을 받을 수 있는가?

몇가지 조건 하에서 복제가 가능하다.

위 질문은 잃어버린 자료에 대한 상호대차의 문제와 예술작품의 상호대차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등에서의 복제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 제3호는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도서관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단, 이러한 복제가 디지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없다.

위의 질문상황에서 중요한 사항은 A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사진과 그림이 마치책이 절판되었을 경우에 준할 정도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지의 문제이다. 저작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값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복제를 요청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손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도서관에 복제물을 요청할 수 없으며, 손실된 저작물의 원본 혹은 그 복제물을 일반적인 유통시장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한다.

또 한가지 위 질문상황에서 고려해볼 만한 사항은 사진이나 그림 등의 예술작품이 상호대차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이다. 제31조는 도서관에서 복제할 수 있는 자료를 도서, 문서, 기록과 그 밖의 자료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 이외의 CD, DVD 등의 비도서자료 뿐만 아니라 사진 및 미술저작물도 도서처럼 복제가 가능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 질문 51

정기간행물 결호로 인해 복제본을 제작할 경우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결호가 있는데, 이를 채우기 위하여 해당 결호를 소장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에 전부 복제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몇가지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

위 질문은 도서관 자료가 손실되어 다른 도서관에 전체 복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31조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도서관이 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 제3호는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도서관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단, 디지털 형태로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다.

이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복제하려는 자료를 일반적인 유통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해당 자료가 더 이상 출판되지 않고 있는 정도의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저작물을 구입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고가라는 이유는 절판에 준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이때 고가라는 것은 해당 저작물에 원래 부여된 가격에 대한 것이지, 해당 저작물이 출판된 지 오래되었거나 희소하여 부가적으로 매겨진 가격이 고가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가보다는 정당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정기간행물은 특성상 과월호를 추가로 인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하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행 및 유통하는 기관을 통하여 구입가능성을 확인한 다음 절판된 것이 확실하다면,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해당 결호에 대한 복제물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 제공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가능하다.

»» 질문 52

CD 세트 중 손실된 일부 CD를 복제할 경우

12개가 1세트인 CD에서 1개를 분실하였다. 판매자는 세트로만 판매하고 있는데, 다른 도서관에 요구해서 잃어버린 CD만 복제 요청할 수 있는가?

요청할 수 있다.

위 질문은 분실 및 손실된 자료를 타도서관에 복제를 요청하는 것과 관련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1조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도서관이 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 제3호는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도서관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단, 이러한 복제가 디지털 형태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첫째, 다른 도서관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둘째, 복제 요청자료가 절판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이어야 하며 셋째, 복제를 해 주는 도서관은 해당 자료를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어야 하며, 넷째,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지 않아야 한다.

위 질문상황은 위의 4가지 조건 중 첫째와 셋째 조건은 명확히 충족하고 있다. 그런데 세트가 아니라 1개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절판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다. 위 질문상황에서는 1개의 CD를 사기 위하여 12개 CD에 부여된 가격을 지불해야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둘째 조건도 충족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분실한 CD를 CD로 복제하여 제공할 경우 디지털 복제가 되므로 넷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요청받은 도서관이 CD 복제물을 요청한 도서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의 허락이 필요하다.

» 질문 53

상호대차용으로 요청할 수 있는 도서의 복제 분량

상호대차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는 도서의 복제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 도서의 한 챕터를 다른 도서관에 복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

1/3정도이다.

도서관은 그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를 사용하여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는 없다(저작권법 제31조는 제1항 제1호).

위 규정은 첫째, 복제하는 도서관에 해당 자료가 보관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복제의 목적이 조사 또는 연구 등의 비영리적 목적이어야 하고, 셋째, 이용자가 그 복제를 요구해야 하며, 넷째, 공표된 도서일 것, 다섯째, 도서 등의 일부분 복제이어야 하고, 여섯째, 1인에게 1부만 제공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의 질문상황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 중 다섯째 조건 즉, '일부분'이 얼마정도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저작권법은 일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도서의 종류에 비취 '도서 등의 일부분'을 특정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중앙도서관복제업무규정』 제6조에서는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 복제(1/3)에 한하며”로 정하고 있다. '일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1/3 규정은 다른 도서관에서도 적용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연속간행물의 경우 수록된 논문 1편을 전체 복사하더라도 '도서 등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도서의 한 챕터가 1/3이하에 해당하는 분량이라면 '일부분'에 포함되는 정도의 분량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 질문 54

상호대차 시 시차를 달리하여 동일 자료를 복제할 경우

상호대차 시 한명의 이용자가 시차를 달리하며 동일 자료의 다른 부분에 대한 복제를 요청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서관은 그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를 사용하여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는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도서 등의 '일부분'으로 복제 가능한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구매를 대신할 수 있는 정도의 복제물이 제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시차를 달리하며 하나의 도서의 완성본을 만들 수 있도록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은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 저작권법의 경우 상호대차의 요건으로 첫째, 체계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지 않는 경우 둘째, 구독신청이나 구입을 대체할 목적이 아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만큼의 총량을 배포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상호대차는 자주 이용되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복제물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따라서 만일 어떤 도서관에서 특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복제하여 구입을 대체할 정도가 될 경우 그 자료를 구매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질문 55

상호대차를 통한 수업목적용 복제물 제공

교사가 절판된 동영상자료를 수업에서 사용하려고 대출을 요청하였다. 도서관은 이 자료를 다른 도서관이나 대여점에서 상호대차를 하거나 대여하여 복사한 후 대출해줄 수 있는가?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는 없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도서관은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위의 질문상황에서 복제하려는 자료가 DVD 형태라면 DVD로 복제할 경우 디지털 복제가 되므로 제31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기 어렵다. 대여점에서 DVD자료를 빌려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을 적용해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가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이 대여점에서 DVD를 빌려 복제하는 것은 그것이 비영리적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이 이용하는 상황이므로 제30조에 근거하여 복제하기도 어렵다.

»» 질문 56

온라인 학술지 상호대차 여부

온라인 학술지 계약서에 상호대차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상호대차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가능하다.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를 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서관은 그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를 사용하여,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로 제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온라인 학술지라고 하더라도 위의 조건 즉, 도서관에 보관된 자료이고(이때 보관은 이용자가 외부에서 가지고 온 자료가 아니라는 의미임), 이용자의 복제요구가 있었고, 공표된 자료일 경우, 1인에게 제한된 부분의 복제물을 1부 제공해 줄 수 있다.

한편 한국복사전송저작권협회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Ariel 등 도서관간 전송방식의 상호대차일 경우 도서관 간에 디지털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최종 이용자에게는 이를 출력하여 제공하도록 협정을 맺어 서비스하고 있다.

» 질문 57

이메일을 이용한 상호대차 가능 여부

이메일을 사용하여 상호대차하는 것은 가능한가? 상호대차시 도서관 사서간에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한 후 사서가 출력한 후, 즉시 그 파일을 삭제하고, 이용자에게는 출력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31조는 이용자 요구에 따라 도서관에서 복제하거나(제31조 제1항)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절판된 자료를 복제해줄 경우(제31조 제3항) 디지털 형태로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질문상황은 이메일로 전송한 복제물을 파일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출력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도서관간의 이메일 혹은 Ariel을 통한 상호대차는 일견 저작권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관간 전송에 해당된다고 보일 수도 있다. 만일 이것을 도서관간 전송으로 볼 경우 전송대상 자료 중 판매용 저작물인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후에 복제 및 전송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도서관 상호대차는 비교적 최신 자료에 대한 요구가 많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상호대차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도서관 보상금 징수단체인 한국복사전송저작권협회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Ariel이나 이메일 등 도서관간 전송방식의 상호대차일 경우 도서관 간에 디지털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최종 이용자에게는 이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협정을 맺어 서비스하고 있다.

»» 질문 58

상호대차로 받은 복사본을 도서관에서 소장하는 경우

상호대차를 통하여 받은 논문 복사본을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어도 되는가?

안된다.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보존용 복제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자료가 절판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일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일반적으로 상호대차 대상이 되는 자료가 절판된 자료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의 상황에서는 상호대차의 목적이 이용자 요구에 따라 다른 도서관에 복제본을 요청한 것이므로 복제본은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질문 59

상호대차 빈도가 높은 자료를 복제하여 제공하는 경우

자주 대출되는 자료일 경우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권 복제본을 얻어도 되는가?

안된다.

어떤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 전체의 복제본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자료가 절판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울 때이다(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3호).

자주 대출되는 자료라면 구입을 통하여 자관 장서로 확충해야한다.

»» 질문 60

상호대차용으로 도서관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할 경우

다른 도서관 요청에 의하여 소장한 자료의 일부분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제공할 수 있는가?

몇가지 조건하에서 가능하다.

국내 저작권법에서 상호대차를 포함하여 도서관간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제31조 제1항 제3호와 제3항이다. 제1항 제3호는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절판된 자료를 복제해줄 경우(제31조 제3항)이며,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은 이용자가 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그 전부 혹은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복제·전송할 수 있다.

위의 질문상황을 제31조 제1항 제3호와 관련지어 볼 때 '다른 도서관의 요청'이 법령 절판된 자료에 대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디지털 파일로 복제하여 제공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제3항과 관련지어 보더라도 '타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즉 화면상에서 볼 수 있도록 전송할 수 있는 것이지 디지털 파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서관 보상금 징수단체인 한국복사전송저작권협회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도서관간 디지털 네트워크 방식의 상호대차일 경우 도서관 간에 디지털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최종 이용자에게는 이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협정을 맺어 서비스하고 있다.

»» 질문 61

영리단체와 협약을 통해 전자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여부

신문사 등의 영리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우리 도서관에서 디지털화된 자료를 전송해 줄 수 있는가?

신문사 도서관의 서비스 범위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

저작권법 제31조 제3항은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디지털로 만들어 전송할 수 있다. 단, 판매용으로 발행된 자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후에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즉, 도서관이 디지털화된 자료의 전송은 도서관간에만 가능하다. 위의 질문상황에서 신문사 등의 영리단체는 도서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료를 전송해줄 수 없다. 다만, 신문사 도서관은 전문도서관으로서 관간전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31조에 의한 복제를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2조는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신문사 도서관은 영리 목적의 법인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관간전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만일 신문사 도서관이 신문사에 소속된 이용자만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다른 이용자들이나 학생, 연구자들에게도 공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복제 및 관간전송을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 질문 62

상호대차를 위하여 Ariel을 사용한 논문 전문 전송

상호대차를 위하여 Ariel 시스템을 통하여 정기간행물의 기사 한편을 복제하여 전달할 수 있는가?

몇가지 조건하에서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인 1부 제한된 부분을 제공하되, 디지털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31조 제3항은 판매용 자료의 경우 출판된 지 5년이 경과한 후에 도서관간 전송할 수 있으며 전송 및 출력에 따른 보상금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상호대차는 최신 자료에 대한 복제요청인 경우가 많으며,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위하여 제정된 제31조 제3항의 보상금 규정을 상호대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도서관 보상금 징수단체인 한국복사전송저작권협회와 한국대학도서관 연합회는 도서관간 디지털 네트워크 방식의 상호대차일 경우 도서관 간에 디지털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최종 이용자에게는 이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협정을 맺어 서비스하고 있다.

»» 질문 63

팩시밀리로 상호대차 자료를 전송할 경우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상호대차하는 것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상호대차하는 것은 우편에 의한 상호대차 서비스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용자 요구에 의하여 저작물의 일부분을 1인 1부 제공하도록 한 규정(제31조 제1항 1호)에 따라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 팩시밀리를 통하여 상호대차를 하는 것은 복제물을 전달하는 과정이 편리해졌다는 것일 뿐 그 복제물이 인쇄본 형태로 이용자에게 전달되므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재사용이 이루어질 가능성과 그로 인해 저작재산권자가 입을 재산적 손실의 가능성이 기존의 우편을 통한 상호대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3.6 교사수업지원

» 질문 64

학생 교재를 디지털화한 후 개인 전자기기에 제공할 경우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상호대차하는 것은 가능한가?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서관은 조사, 연구 목적을 가진 이용자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질문상황은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서관이 서비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한편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등이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복제 및 전송 등의 주체가 교육기관이거나 교육지원기관이어야 하며, 해당 수업 또는 그 수업을 지원할 목적과 저작물 일부분 복제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교육기관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도 포함된다. 또한 교원의 지시를 받아 학생이 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교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서가 교육용 복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이 있다.

그런데 실령 교원의 요청에 의하여 사서가 복제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상황은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는 것이므로 제25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일부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질문 65

수업자료 목적으로 웹 이미지 제공할 경우

학교도서관 사서가 수업지원 자료로 웹 사이트에서 검색한 이미지 파일을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인가?

이견이 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첫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의 주체가 교육기관 이거나 교육지원기관이어야 하며, 둘째, 목적이 해당 수업 자체 또는 그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디지털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도 적용된다.

위의 질문은 학교도서관이 제25조 제2항의 요건 중 복제, 배포 등의 주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제25조 제2항은 복제 등의 행위 주체를 교육기관이라고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교사의 요청에 의하여 학생 또는 행정직원이 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도서관이 직접 복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이 학교에 소속한 것이므로 복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사서는 교육목적용 복제물 제공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질문 66

수업자료 목적으로 절판도서를 복사할 경우

교수가 절판된 책의 일부를 복사하여 수업자료로 활용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온 경우 대학 도서관이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는가?

제공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다.

위의 질문 상황에서 교수가 요청한 절판된 책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면 일부분을 복제하여 1부 제공할 수 있다.

»» 질문 67

학교도서관 자료를 교실에서 수업 지정자료로 배치할 경우

학교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지정 자료로 배치하여 이용하기를 요청한다. 학교도서관 밖에서 수업지정 자료로 배치하여도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가?

배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0조 배포권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더 이상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도서관이 서점 등을 통하여 저작물을 구입하였을 경우 그 도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이것을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of right)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고 한다. 이러한 배포권의 제한으로 인하여 도서관은 소장자료를 대출해줄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질문상황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중 일부를 특정 교실에 대출해주는 경우이므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다.

» 질문 68

수업자료 목적으로 신문기사 전문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

교사가 학교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신문의 기사 1편을 수업하는 학생들이 동시에 읽을 수 있도록 학생 수 만큼 전문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견이 있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등의 일부분을 1인에게 1부 복제해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의 질문 상황은 1부가 아니라 학생 수 만큼 복제물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이 학교에서의 수업 목적을 위한 이용이므로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이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위 규정은 첫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의 주체가 교육기관 이거나 교육지원기관이어야 하며, 둘째, 해당 수업 또는 그 수업을 지원할 목적이야 하며, 셋째,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디지털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도 적용된다.

그런데 복제 등은 일반적으로 교육을 행하는 교사나 교사의 요청에 의하여 학생이나 행정직원이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교사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이 복제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따라서 교육목적용 복제물을 제공할 경우 사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가급적 교사 또는 교사의 지시를 받은 학생이 직접 해당 자료를 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질문 69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여 편집교재를 제작할 경우

교사가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여러 자료의 일부를 복사하여 수업 교재로 만든 다음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배포하고자 자료를 요청하였다. 도서관이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는가?

제공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등의 일부분을 1인에게 1부 복제해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질문상황에서 교사가 요청한 각 자료의 일부분을 복제하여 1부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수업 또는 수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위의 질문상황에서 교사는 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복제물을 학생 수 만큼 복제 및 제본하여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질문 70

상호대차 자료를 수업 지정자료로 활용할 경우

다른 도서관에 요청하여 상호대차로 학술논문 1편을 복사하여 받았다. 이 복사물을 도서관에서 여러 명이 수강하고 있는 수업의 지정도서로 정해 놓을 수 있는가?

가능하다.

도서관은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를 사용하여 그 도서의 일부분을 1인 1부 제공할 수 있다(제31조 제1항 제1호). 위의 질문상황에서 다른 도서관에 상호대차로 요구하였다는 것은 수업을 하는 교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의 질문상황은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경우, 사서는 교수의 요청에 따라 다른 도서관에 상호대차를 요구하여 해당 학술논문 1편을 제공받은 후 교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는 해당 학술논문을 학생 수 만큼 복제하여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단,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 질문 71

수업목적으로 자료를 복사하는 범위

학교도서관은 교사가 수업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복사하여 제공해도 되는가? 아니면 저작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

이견이 있다.

도서관은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1인 1부 일부분의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고, 이때 디지털 형태로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다.

교사가 수업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은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시 한편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서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부득이하게 전체를 복제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교사가 수업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해야하지만, 수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라면 복제할 수 있는 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제2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복제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교육기관은 물론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도 포함된다. 그리고 복제의 주체인 교원이 실제 복제행위를 학생에게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교사의 의뢰를 받은 사서가 교사를 대신하여 교육목적용 복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있다.

»» 질문 72

학습목적으로 딸림자료를 복사하여 제공할 경우

복사해주고 싶어한다. 교육을 목적으로 복사할 경우 복제물을 제공해주어도 되는가?

저작재산권자로부터의 허락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교사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복제의 주체가 학교나 교사라면 실제로 복제행위를 학생이나 사서에게 시킬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할 수 있지만 저작물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 전체 복제도 가능하다.

그런데 위 질문상황은 특정 수업에 필요하여 복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 요청한 경우라고 보인다. 만일 특정 수업을 위한 복제 요청이 아니라면 도서관은 CD의 복제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 질문 73

학교도서관 멀티미디어 자료를 공연에 활용할 경우

교사가 학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공연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공연에 학교 소장 자료의 일부가 상영되거나 전시된다면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 일인가?

위배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판매용 음반 및 판매용 영상물의 공연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는 면책을 인정받으려면 공연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물이어야 하고, 관람객이나 청중으로부터 관람료나 입장료 등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상물을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전시권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에 국한되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영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질문 74

학생 제작과제에 도서관 영상물이 사용된 경우

학생들이 수업과제로 제작한 영상물 또는 강의자료에 도서관에서 대출한 영상물의 일부 또는 전체가 사용된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는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학교에서의 수업 과제 또는 수업에서의 발표나 강의를 위해서 작성된 것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안에서는 우선 수업과제로 작성한 저작물에 다른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저작물의 성질이나 목적, 예컨대 그림 및 사진자료, 시 1편처럼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저작물 전체를 활용할 때에는 그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저작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질문 75

강의실에 배경음악으로 스트리밍사이트를 활용한 경우

대학 강의실에서 배경음악으로 스트리밍 사이트를 활용하려고 하는 데, 이것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받아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스트리밍 사이트를 대학 강의실에서 활용하는 것이 수업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트리밍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은 음악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렇지만 대학에서의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학은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한국복사전송저작권협회에 지불하여야 한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음악의 사용이 수업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이 된다고보다는 단순히 강의실의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러한 경우라면 학교 교육 목적, 수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은 후에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 질문 76

도서관 자료를 스캔하여 강의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할 경우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일부나 구독하고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스캔하여 수업 지원 목적으로 학교 내 강의지원 시스템에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업로드하여 제공할 수 있나?

이견이 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은 수업 또는 지원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는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업목적용 복제 및 전송 등을 할 수 있는 주체에 담당 교수는 물론 교수의 지시를 받은 학생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여기에 도서관 혹은 사서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이 조항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복제나 전송의 주체를 교사나 교수 등 교원과 대학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 도서관이 복제나 전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와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이 대학 및 학교 내 기관이므로 당연히 복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 질문 77

수업목적으로 교수가 학술논문을 웹을 통해 학생에게 제공

교수가 대학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지에서 학술논문을 복사한 후 스캔한 다음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웹페이지(또는 강의지원시스템)에 올려놓았다. 이 경우는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 사항인가? 대학도서관이 제재를 가해야 하나?

위배되지 않는다. 단 수업목적을 위한 복제 및 전송이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은 수업 또는 지원목적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 대학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사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에 해당이 될 수 있으나, 학술논문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웹페이지가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도 모두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수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디지털 파일을 제공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불하면 적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저작물 전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질문 78

도서관 학술논문을 스캔 후 수업자료로 온라인으로 제공

대학도서관이 인쇄본으로 소장하고 있는 학술논문을 디지털화하여 수업 지정도서로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나?

이견이 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은 수업 또는 지원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 대학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조항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복제나 전송의 주체를 학교나 교수 및 교수의 지시를 받은 학생 등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해야한다는 견해와, 대학도서관이 대학 내 기관이므로 당연히 학교에 해당되어 복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 질문 79

Public Domain 웹 자료의 수업 지정자료 요청

웹상에서 제공되는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Public Domain)을 교수(교사)가 수업지정 자료로 도서관에서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할 경우 도서관에서 지정자료로 제공할 수 있나?

그렇다.

저작권은 소유권과 달리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이에 대해서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의 보호가 이루어진다. 이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통상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저작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그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뿐만 아니라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자 없이 사망한 경우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공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저작권이 소멸되어 공중의 어느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저작물이 공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2013년 7월 1일부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연장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1일 이전(6월 31일까지)에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모두 공유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저작자가 1962년 및 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저작권이 소멸된 것이 확실하며,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하였거나 상속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공유의 영역에 해당이 되어 저작물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도서관은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7 문화프로그램

» 질문 80

도서관 그림책을 활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할 경우

그림책과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판넬과 대형 그림책 등을 제작하여 영상물로 교내에서 상영해도 괜찮은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의 수업을 위한 경우라면 괜찮다.

그림책에 수록된 그림을 판넬로 제작하거나 대형 도서로 다시 제작하는 것은 그림책의 미술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림책의 줄거리를 바탕으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행해져야 한다. 그림책은 그림과 이야기가 결합된 결합저작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이와 글쓴이의 허락을 모두 필요로 한다. 그러나 영상물의 교내에서의 상영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의 수업을 위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 질문 81

도서관 주최로 공연을 할 경우 원작자 허락 여부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가을학예회 때 ‘웨스트사이드스토리’를 공연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무료 공연일 경우 저작권 처리는 필요없다.

저작권에 관한 처리에 앞서서 먼저 공연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웨스트사이드스토리’의 대사 등 여러 가지 표현과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공연을 하거나 대사 등의 내용에 일부 변경을 가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이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29조에는 공연권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생실연(예, 라이브 공연)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제3자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무상으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객들에게 입장료를 받는다면 제3자로부터 협찬을 받지 않으면서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작품을 공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입장료나 제3자로부터의 협찬을 받아서 공연을 진행할 경우 혹은 출연자들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웨스트사이드스토리’의 저작권자로부터 공연에 대한 허락을 얻은 후에 공연을 해야 한다.

한편 ‘웨스트사이드스토리’의 전체적인 줄거리에 바탕을 두되, 대사나 그 표현을 달리하여 새로운 저작물로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저작물의 줄거리를 활용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줄거리 자체는 저작물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공연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대사나 행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질문 82

도서관 소장 음반 공연 여부

도서관이 소장한 음반을 대중에게 공연할 수 있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연권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해당이 되려면 재생의 대상이 되는 음반이나 영상물은 판매용으로 제작이 된 것이어야만 한다. 또한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로 입장료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 질문 83

도서관 운영 강좌에서 도서관 소장 영상물을 상영하는 경우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에서 수업자료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영상물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 경우는 영상물 상영(공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수업으로 해석되는지?

공연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수업에 대한 저작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및 기타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로 그 범위가 제한이 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에서 저작물을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업으로서의 저작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까닭에 그것이 수업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문화프로그램에서 수업 과정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는 그 본질상 가족이나 친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들에게 저작물을 공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저작권법 제29조에서 정하는 공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 질문 84

문화프로그램용 도서관 자료 복사 제공

문화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복제할 수 있나? 독서회 활동을 위하여 도서관에 소장한 소설책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소설 1편을 회원들이 동시에 읽을 수 있도록 회원 수 만큼 전문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복사물 제공이 가능한가? 학교의 합창 대회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악보를 참가 학생 수 만큼 복사하여 제공해도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나?

복제물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의 복제에 대해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조사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 도서 등의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하여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대체적인 근간이다. 따라서 각각의 이용이 이러한 면책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문화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복제하는 것은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 면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도 합창대회 참여자의 수만큼을 복제하는 것 역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면책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학교의 합창대회가 수업에 해당이 된다면, 저작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저작물의 일부분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악보 전체를 이용하는 것까지 면책의 범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는 저작물의 이용의 양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 된다.

» 질문 85

독서장려를 위하여 도서 일부를 온라인으로 게시할 경우

독서장려를 위해서 책의 한 두 페이지를 매일 스캔해서 올리는 것도 저작권법에 저촉되나?

저촉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를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10호는 전송을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책의 한 두 페이지를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에 대한 복제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전송에 해당이 된다. 이 경우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그 분량이 비록 소량에 불과하고, 독서 장려라는 공익적인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책의 한 두 페이지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시나 사진, 그림 등의 경우에, 그 자체가 완전한 저작물 한 편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구성하게 된다. 다만 독서진흥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예컨대 2,000페이지의 소설 가운데 1-2페이지를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 3이 규정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책에서 1-2페이지를 연속해서 업로드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질문 86

도서관 동화구연프로그램을 위하여 동화책을 그림으로 변환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동화구연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야기의 내용을 그림으로 바꾸기 위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

창작성이 있는 그림이라면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동화는 어문저작물 혹은 어문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진 저작물로, 동화구연프로그램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동화를 낭독하는 행위로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의 일종이다. 동화는 줄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동화에 그림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동화구연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야기의 내용을 그림으로 제작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동화책에 포함된 그림을 그대로 유형의 판넬이나 그림으로 다시 제작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그림을 제작하는 행위는 동화책에 포함된 미술저작물인 그림을 복제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다음은 동화책에 그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화작가의 줄거리와 표현을 바탕으로 그림으로 제작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그림을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라기보다는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화와 그림의 관계가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이는 그림이 동화책의 내용에 바탕하여 이를 얼마나 창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동화의 내용은 단순한 소재에 지나지 않고 동화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창작적인 표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순수한 창작물에 해당이 될 것이다. 순수한 창작물에 해당이 된다면 동화 저작권자와는 아무런 상관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림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질문 87

도서관 동화구연프로그램 운영시 원작자 허락 여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동화구연프로그램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관객들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동화구연하는 사람에게도 별도의 사례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저작권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동화구연프로그램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동화를 낭독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공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연권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 먼저 동화구연프로그램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이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업의 홍보나 간접 마케팅을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영리를 위한 목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제3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한다. 청중이나 관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아야 하며, 제3자로부터 협찬이나 후원도 받지 않아야 한다. 셋째 동화구연을 진행하는 실연자에게도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저작권에 관한 문제없이 동화구연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 질문 88

도서관 동화구연프로그램을 위한 동화책 스캔

동화구연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서 그림책을 스캔해서 활용할 수 있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활용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를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을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형물에 고정하는 행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복제의 경우도 그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그림책을 스캔하는 것은 그림책의 표현과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고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에 해당한다. 그림책을 개인이 스캔해서 자신이 소유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적 복제에 해당이 되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것을 공중을 대상으로 보여준다면 사적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 질문 89

도서관 동화구연프로그램에서 원작 내용을 바꿀 경우

도서관에서 동화구연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청중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원작의 이야기를 조금씩 바꾸어서 진행해도 되는가?

프로그램의 진행상 불가피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동화구연프로그램은 어문저작물인 동화를 낭독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불특정 다수의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서는 공연으로 바라본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연은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낭독하는 행위에 초점을 둔 것으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저작물의 내용이나 표현을 변경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자에게는 저작재산권과는 별도로 저작인격권이 부여되는 데, 그 가운데에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표현이나 내용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도 포함되어 있다. 저작물의 내용이나 표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4호가 규정하는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면 저작자에게 별도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동화의 내용이나 표현에 그리 커다란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청중이나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사소한 변경 정도는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명확한 범위와 해석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한다.

»» 질문 90

비매용 영상물을 상영할 경우

판매용으로 발간되지 않은 영상물을 저작권법상에 저촉을 받지 않으면서 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상영해야 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생산한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배타적인 권리라 함은 그 이용의 허락과 금지를 누구의 간섭도 없이 저작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저작물의 이용이 사회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몇몇 경우에는 법률로써 그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물을 활용한 공연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른 면책을 인정받으려면 청중이나 관객으로부터 관람료 등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과 더불어 공연의 객체가 되는 음반이나 영상물이 판매용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판매용으로 발간되지 않은 영상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상영할 수는 없다.

다만 판매용으로 발간되지 않은 영상물을 저작자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도서관에 제공한 경우라면, 저작물의 공표에 저작자가 동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자료 기증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통상적인 자료의 열람의 범위에서 자료를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질문 91

도서관 제작 영상물을 상영할 경우

도서관이 방송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재녹음 및 재녹화하여 오락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틀어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방송 콘텐츠의 대부분은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제를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방송으로 송출되는 콘텐츠를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제작하는 것도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도서관이 방송사의 허락 없이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제작하는 것은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며, 이러한 저작물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또 다른 저작권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또한 불법적인 복제물을 활용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저작물을 공개하는 하는 것은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판매용 영상물이나 음반의 공연권에 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이 되려면, 도서관의 경우에는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판매용 영상물이나 음반을 관람객들에게 아무런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해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공연에 제공되는 저작물이 판매용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연의 방법으로 제공하였을 때 면책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방송사로부터 적절한 콘텐츠를 구입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질문 92

공공도서관 영상물을 교육적 목적으로 상영할 경우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교육적인 목적이나 프로그램을 위하여 상영할 수 있나?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물을 활용한 공연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른 면책을 인정받으려면 청중이나 관객으로부터 관람료 등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과 더불어 공연의 객체가 되는 음반이나 영상물이 판매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고, 도서관의 경우에는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된 저작물로 그 면책의 범위가 한정된다.

공공도서관이 소장한 비디오 테이프를 교육적인 목적이나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저작물을 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연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질문 93

도서관에서 식음료(유료)와 같이 영상 상영회를 개최할 경우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는 영상 상영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물론 식사와 음료 제공에 대해서는 실비를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물의 공연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면책의 요건은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물을 관람객이나 청중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대상 저작물은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된 것이어야만 한다. 제시된 질문에서는 영상상영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면서 해당 음식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이 조항의 면책 요건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참가자들이 지급하는 금액이 식사와 음료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면책에 해당이 된다.

그렇지만 문제는 참가자들에게 징수하는 금액이 과연 순수하게 식사와 음료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는 참가자들이 지불하는 금전적인 반대급부가 식사와 음료 제공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만을 음식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아야 할 것이다.

»» 질문 94

도서관 영상물을 대상으로 무료상영을 할 경우

이용자들이 도서관 영상자료를 대출해서 무료 상영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나?

판매용 영상물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영상자료를 공중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에 해당이 된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물을 활용한 공연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개인이 구매한 저작물을 활용하거나 도서관에서 대출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조항에 따른 면책을 인정받으려면 청중이나 관객으로부터 관람료 등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과 더불어 공연의 객체가 되는 음반이나 영상물이 판매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판매용으로 제작된 영상물이고, 관객들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도서관에서 대출한 영상물을 활용해서 이용자들이 상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판매용으로 제작이 된 것이 아닌 영상물의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 질문 95

도서관 영상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에 대한 제약여부

도서관이 소장한 영상자료를 무료로 상영하는 데 참여자의 수에 대한 제약 같은 것이 존재하나?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물에 대한 공연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물을 활용해서 청중이나 관람객으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활용한 공연을 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이 영상자료를 활용해서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에는 그 제공되는 영상물이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된 것이어야 한다.

공연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공중은 특정한 다수를 포함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이 공중을 대상으로 영상자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최하려고 한다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저작물을 상영하는 대상이 공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더라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자료의 상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특정 다수인을 포함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가족이나 친지 등과 같이 아주 소수의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공연에 해당되지 않아서 별도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질문 96

도서관 문화행사에서 음원을 사용할 경우

도서관의 문화행사 등에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 저작권 문제 없이 가능한가?

몇가지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물을 활용한 공연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른 면책을 인정받으려면 청중이나 관객으로부터 관람료 등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과 더불어 공연의 객체가 되는 음반이나 영상물이 판매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판매용으로 제작된 음반을 도서관이 진행하는 문화행사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면책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화행사에서 활용하는 음원이 판매용으로 제작된 것이고, 관람객이나 청중으로부터 관람료나 입장료 명목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

» 질문 97

학교에서 등하교시 학교도서관 소장 음원을 방송할 경우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교내방송으로 음악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저작권법에 저촉되나?

저촉되지 않는다.

‘방송’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은 공연뿐만 아니라 방송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혹은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하교시간에 교내 방송을 송출하는 것은 학교의 유·무선 방송 설비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방송의 개념에 해당이 된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하교시간에 교내 방송으로 제공하는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학생들에게 방송 청취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면책에 해당한다. 다만 방송 중에 상업적인 광고 등을 삽입해서 제3자로부터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르는 면책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 질문 98

도서관 소장 사진이나 그림을 학교행사에 전시할 경우

교내 행사에 도서관이 소장한 사진이나 그림자료를 전시할 수 있나?

일시적인 전시라면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의 원작품 소유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소장한 사진이나 그림자료를 활용해서 일시적인 전시회를 기획해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도서관 로비 등과 같이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향시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 질문 99

예술작품을 스캔하여 도서관에서 전시를 할 경우

도서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예술작품을 스캔하여 전시할 수 있나?

전시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를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술작품을 스캔하는 것은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에 고정하는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복제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한편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9조에 의해서 전시권이 인정이 된다. 전시권은 작품의 원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복제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예술작품을 스캔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려면, 저작물의 복제와 전시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 질문 100

도서관에서 사진을 전시할 경우 초상권 문제

학교의 역사와 관련되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데,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초상 사용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초상 당사자의 허락을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

초상권은 실정법에 의해서 그 요건이 정해진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격보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가 이루어진다. 초상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자신의 신체적인 권리를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인 촬영거절권과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자신의 신체적인 특징을 담은 초상의 복제나 공표를 거절할 수 있는 공표거절권으로 구성이 된다. 따라서 인물 사진을 전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상 당사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질문의 경우와 같이 오래 전의 학교 역사를 다루고 있는 사진에서 초상당사자를 찾아내어 전시를 통한 공표에 허락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은 매우 빈번하고, 사회 공익적인 취지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도 초상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초상의 공개가 개인의 초상 보호의 이익보다 공공의 알 권리나 공동체의 이익이 훨씬 더 큰 경우에는 초상권의 보호가 불가피하게 제한되기도 한다.

질문의 경우는 학교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취지에서 학교라는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공익적인 취지를 띄고 있다는 점에서 초상권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초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초상의 내용 자체가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비밀영역을 침범하는 경우라면 초상권 제한의 사유에 해당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전시회에 사용할 사진을 고르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나 비밀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3.8 온라인서비스

» 질문 101

도서관 웹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저작권 위반에 대한 책임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올려놓고 공유할 수 있는 웹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웹 페이지 서비스에서 저작권에 위배되는 활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서관이 법적 책임을 지는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도서관 면책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은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나목이 정의하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에 해당되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위의 질문에서 도서관의 웹페이지 서비스 제공은 그 가운데에서도 저장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면책의 여부가 결정된다. 면책이 인정된다 함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도서관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침해 행위를 당사자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의미한다.

저장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송신을 시작하지 않고 2) 저작물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3)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 채택 및 이의 이행 4) 권리자가 이용한 저작물 식별 및 보호를 위한 표준적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은 경우 5) 침해행위로부터 직접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을 경우 6) 침해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때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7) 복제, 전송 중단이나 재개에 대한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이다.

» 질문 102

기관 내 서버에 DRM을 활용한 원문복사 서비스

대학 교내 구성원에게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학교 도서관 서버에 PDF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DRM을 걸어서 저장이나 복사 등을 금지하는 장치를 파일에 해둔다면, 전자전송을 통해 이용자가 원문복사를 받아 봐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

도서관의 저작물 전송에 대한 면책은 저작권법 제31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1조 제2항은 도서관 자기 도서관 관내에서의 저작물 전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제3항은 도서관 상호간 원문 전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이 경우에 해당이 되려면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다른 도서관 관내로 그 범위가 제한이 된다. 자기 도서관 관내 일 경우에는 동시사용자 수가 제한이 되며,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발행 후 5년이 경과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용자에게 디지털 형태로 된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그 요건이다.

이 사안은 도서관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난 외부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이후에 저작물을 활용해야 한다.

» 질문 103

원격교육용으로 도서관 자료 DB 구축 후 제공할 경우

원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를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원격 교육대상자로 제한하여 제공하여도 괜찮은가?

담당교사나 교수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일부분을 수업 당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격교육이 제25조 제2항에 의해서 면책을 인정받는 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정규 과정에 의한 원격교육인 경우에는 대체로 여기에 해당이 되며, 이들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기관인 도서관도 이 조항에 따르는 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면책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업 담당교사나 교수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일부분을 수업 당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면책이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에 따르는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고 질문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저작물은 원격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물의 일부분만을 이용할 수 있다.

»» 질문 104

학교간 협동수업을 위한 도서관간 전송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른 학교와 협동수업을 진행하는 데 수업에 필요한 도서관 디지털 자료를 학교도서관간에 전송해도 괜찮은가?

이견이 존재한다.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격교육이 제25조 제2항에 의해서 면책을 인정받는 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정규 과정에 의한 원격교육인 경우에는 대체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 허용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저작물의 전체를 이용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에 따르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에 따르는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25조 제2항에 따른 복제를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이 조항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복제나 전송의 주체를 교사나 교수 등 교원과 대학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 도서관이 복제나 전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와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이 대학 및 학교 내 기관이므로 당연히 복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 질문 105

도서관간 전송받은 디지털원문 파일 저장 및 출력여부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관간 전송을 통해 제공받은 디지털 원문 파일을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나?

저작물의 출력은 가능하지만 원문 파일의 저장은 가능하지 않다.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관한 면책의 요건을 규율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도서관은 보관된 자료를 활용해서 저작물을 디지털화할 수 있으며, 도서관 상호간 전송도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저작물은 아날로그 형태를 유지하여야만 한다. 즉 이용자에게 디지털 원문 파일을 직접 제공할 수는 없으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저작물은 아날로그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에 합당한 경우라면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관간 전송을 통해서 제공받은 디지털 원문 파일을 출력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도서관 관간 전송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원문 파일을 도서관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법 제31조 제3항이 규정하는 도서관 상호간 저작물 전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는 디지털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복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문 파일의 저장은 면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질문 106

외부강사 강연을 녹화하여 제공할 경우

외부 초빙 강사의 강연을 녹화해서 홈페이지 상에서 내부 교직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인가?

초빙 강연이 이루어질 때에 초청강사에게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저작권 위배에 해당되지 않는다.

외부 초빙 강사의 강연을 녹화하는 일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에 해당되고, 그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된다. 저작권법은 공중을 특정 다수인을 포함하는 불특정 다수인(법 제2조 제32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교 교직원은 가족이나 친지와 같이 4-5명 정도의 소규모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연을 제공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됨에 틀림이 없다. 이 경우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할 때 미리 강연을 영상으로 제작할 것이며,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부직원들에게 공개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허락을 받으면 적법하게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 이미 강연이 이루어진 이후라도 해당 강연자에게 서비스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질문 107

저작권이 도서관 모기관에 귀속된 저작물의 디지털화

기관 내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를 디지털화하려고 한다. 보고서 상에 소속기관이 저작권자임을 밝히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내부 업무 협의만으로 저작물을 서비스해도 무방한 것인가?

무방하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지만, 계약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도 있으며, 특정한 기관이나 회사의 소속 직원이 직무의 일환으로 작성한 것은 법인이 저작권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해당기관이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저작물을 관리하는 내부 부서와의 업무 협의만으로도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해도 무방하다. 회사의 소속 직원이 직무의 일환으로 작성하여 법인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

다만, 외부 위탁에 의해서 작성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양수받는 내용의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혹 원고료나 용역비를 지불한 것만으로 저작권이 발주처에 있는 것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의 내용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질문 108

교비 지원을 받은 저작물의 디지털화

교비 지원을 받은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온라인서비스하려고 하는 데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이용하는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비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이 교비를 지원하는 학교에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며, 저작권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절한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자에게 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면 대개의 경우 저작권과 관련되는 아무런 문제없이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공표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최근에 발간되는 학회지의 경우에는 대개 저작물의 저작권을 학회로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이 체결이 되고 있으며, 교비 지원을 조건으로 해당 학교에서 저작권의 양도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이용허락의 주체는 저작자가 아니라 그 저작권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학술논문 저자의 허락이 아니라 저작권자 즉 해당 학회 또는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적법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 질문 109

외부지원을 받은 저작물 대상 온라인 서비스

외부 지원을 받아 제작된 저작물을 교내 이용자에게 온라인서비스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적법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의 지원을 받아서 작성된 저작물인가는 원칙적으로 저작권과는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 없다. 다만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기관이 저작권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거나, 저작물 사용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연후에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원기관으로 저작권이 양도되었다면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은 후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질문 110

서지 및 초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저작권 동의 여부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의 서지사항과 초록만으로 DB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서지사항의 DB 구축은 가능하지만, 초록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서지사항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므로 목록 DB를 구축하며 저작재산권자로부터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초록은 학위논문이나 연구논문의 서두나 말미에 저자가 직접 작성해서 붙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집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인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서비스해야 한다. 반면에 사서나 정보관리자들이 직접 초록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초록의 저작자는 직접 초록 작성에 참여한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저작자의 원래 의도와는 어긋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게 된다. 즉, 초록은 저작권이 미치는 영역이므로 DB 구축 시 권리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초록은 저작물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저작물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려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저작물의 이용이나 판매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까지를 저작권으로 제한하게 되면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의 보호라는 실익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저작물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35조의 3은 저작권 제한의 일반 조항과는 구별되는 포괄적인 의미의 저작물 공정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초록 DB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반드시 공정이용에 해당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 질문 111

정기간행물 목차와 자료 일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경우

공공도서관에서 연속간행물의 목차를 웹상에 올리면서 특정 목차에 관련된 원문이미지(지도그림, 약도그림, 위치도 그림, 여행패키지 경유 그림 및 여러 웹사이트 주소가 실린 페이지의 일부분)를 오려 목차와 같이 이용자가 웹상에서 볼 수 있도록 웹상에 제공하고자 한다. 이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되는가?

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이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요건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창작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표현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그 표현을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저작물은 저작권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특정 정보나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저작물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연속간행물에 수록된 지도, 약도, 위치도, 여행패키지 경유 그림이 과연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대상이 되는 지도, 약도, 패키지 경유 그림 등도 대체로 여행과 관련된 사항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임에 틀림이 없으며, 이러한 것들을 웹상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저작권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다만 이것이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목적이 공익적이고,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공정이용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의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러한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 질문 112

소장자료를 외주로 디지털화할 경우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를 외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가?

문제가 없다.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서 판매되는 저작물을 제외하고 도서관은 그 소장자료를 모두 디지털화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이 되려면 복제와 전송의 주체가 모두 도서관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디지털화 작업을 외부업체에 맡기게 되면 복제 행위의 실질적인 주체는 도서관이 아니라 해당 작업을 하는 외부업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도서관이 소장자료를 디지털저작물로 만드는 작업은 실제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에 디지털화 작업에 참여하는 외부업체는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의뢰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에 복제의 목적이 있지 그 밖의 다른 방식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외부업체의 역할은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행위를 대행하는 역할 정도로 이해해야만 한다. 따라서 외주업체를 통해서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행위는 도서관의 직무 형편상 불가피한 것으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1차적으로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외부업체가 디지털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체에게 디지털저작물의 외부 반출이나 불법적인 활용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두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 질문 113

온라인 유통 저작물 사용시 출처 처리 여부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저작물을 저작자나 출처를 밝히고 이용하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온라인상에 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이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CCL과 같이 저작물을 온라인상에 업로드하면서 미리 저작물 사용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그 제시된 조건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 사용 허락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저작자나 출처만 밝히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인용'과 같은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정이 된다.

» 질문 114

소장 CD를 하드 디스크에 복제할 경우

소장한 CD를 모두 하드디스크에 복제해두어도 되나?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2호는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의 소장 도서 등을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의 자체적인 자료 보존 목적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의 복제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만일 저작물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자체 보존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는 없도록 허락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있다. 저작물 자체가 이미 디지털 형태로 제작이 되어 판매가 되고 있다면, 해당 저작물을 구매해서 비치하는 편이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보다 바람직하다는 법률 정책적인 판단인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CD를 시중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CD는 그 자체로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그것을 하드디스크에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저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질문 115

상호대차를 위해 정기간행물을 자체 DB로 제작할 경우

상호대차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하여 정기간행물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도 되나?

몇가지 조건을 준수할 경우 가능하다.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저작물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저작권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체적인 보존의 필요나 이용자 서비스를 위해서 복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서비스의 범위나 방법 역시 저작권법 제31조의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저작권에 관한 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소장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해당 정기간행물이 이미 디지털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저작권법 제31조 제4항은 해당 도서 등이 이미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을 경우에는 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면책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된 저작물은 자기 도서관 관내에서 서비스할 경우에는 동시사용자 수의 제한에 따라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부수만큼만 이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다른 도서관의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도서 등의 경우에는 발행 후 5년이 경과된 도서 등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에 따르는 보상금을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 질문 116

보존을 위하여 자료를 디지털화할 경우

도서관 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디지털화할 수 있나? 사서가 지정도서로 선정된 정보를 좀 더 많이 이용시킬 수 있도록 디지털화할 수 있나? 도서관에서 자료의 디지털화가 가능한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 문제가 되는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모든 종류의 자료가 가능하다. 다만 이미 디지털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판매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관한 면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도서관은 소장 자료의 자체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저작물 전체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저작물이 디지털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

한편,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 요건이 제한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서관은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저작물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물리적인 숫자만큼으로 제한이 된다. 예컨대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가 2권이면 2명까지만 동시 이용이 가능하고, 3명 이상이 동시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5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의 출력 및 관간 전송에 대한 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 질문 117

도서관이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였을 경우 저작권 귀속

도서관이 디지털 자료를 만들었을 경우 그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소유하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

도서관이 디지털 자료를 만드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도서관이 기획 하에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도서관이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는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하는 데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만 한다.

둘째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활용해서 만든 디지털자료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 도서관이 한 역할은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디지털로 복제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이 저작권자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디지털자료가 그 수가 매우 많아져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게 될 경우에는 도서관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로서 제한적인 저작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 질문 118

보존을 위하여 자료를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

도서관은 마이그레이션용 복제를 할 수 있나? 도서관에 소장된 비디오테이프가 베타 포맷에서 사용할 수 없어졌을 때 VHS 용으로 복제하여 쓸 수 있나 아니면 새 것으로 구입해야 하나? 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비디오테이프를 DVD 카피로 전환할 수 있나? 도서관에 소장된 오래된 필름스트립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복제할 수 있나?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자료를 DVD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가?

대체로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2호는 도서관이 자료의 자체적인 보존 목적을 위해서 보관된 도서 등을 활용해서 복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용자 서비스에 관한 사항과는 달리 이 경우에 해당되면 저작물 전체를 복제할 수도 있으며,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는 것도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에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디지털 형태로 이미 제작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모두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복제 작업을 행하기 이전에 관련 저작물이 디지털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상 저작물이 이미 디지털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도서관의 면책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디지털 저작물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질문 119

필사본과 미간행원고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할 경우

도서관 특수 장서에 사망한 유명인의 편지가 있어 이를 도서관 웹사이트에 스캔하여 올려놓고자 한다. 가능한가? 미간행 원고를 디지털화 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나?

먼저 편지가 아직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가를 우선 살펴야한다. 편지의 필자가 1962년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공유저작물에 해당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편지를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서 도서관 웹사이트에 게재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편지의 필자가 1963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라면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열람에 대한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이 편지가 도서관에 입수되었다면 저작권법 제11조 제5항에 의해서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편지를 대중적으로 공개하거나 열람에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31조 제2항에서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은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할 수 있으며, 도서관 관내 및 다른 도서관의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 법률이 제시하는 까다로운 조건(자기 도서관 내에서의 전송일 경우 동시사용자 수의 제한, 다른 도서관으로의 전송일 경우 보상금 지급 및 산정장치, 복제 방지장치, 접근제한장치 등의 의무화)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 질문 120

미간행 원고를 요약하여 디지털화 할 경우

미간행 원고를 요약하여 디지털화한 뒤 이용자에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 할 수 있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

미간행 원고를 요약해서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미간행 원고의 저작권 문제를 먼저 살펴야만 한다. 저작자가 직접 미간행 원고를 도서관의 자료로 기증한 경우라면, 기증 당시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저작권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증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표에 동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도서관 자료로 이용자들에게 열람을 통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원고를 요약한다는 것은 초록을 작성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사서가 직접 초록을 작성할 경우 저작자의 원래 의도와 어긋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된다. 즉, 초록은 저작권이 미치는 영역이므로 DB 구축 시 관리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초록은 저작물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저작물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려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저작물의 이용이나 판매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까지 저작권으로 제한하게 되면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저작물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위 질문상황을 저작권법 제35조의 3의 공정이용에 부합하는 조건에 따라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초록은 저작물의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이용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반드시 공정이용에 해당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 질문 121

저작권자 허락없이 학술원문구축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학술지 원문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해당 자료의 원문이 자관도서관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서비스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문제가 있나?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문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 저작권법 제31조에서 도서관의 복제와 전송에 관한 면책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법률이 정하는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이 된다. 자관 내에서 원문을 이용하도록 제공할 경우에는 그 동시사용자수를 도서관이 보유한 자료의 수만큼으로 제한하며, 도서관 상호간 전송일 경우에는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의 경우 발행 후 5년이 경과된 것으로 그 범위가 제한이 된다.

또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난 연후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RISS의 경우는 도서관 관내에서의 이용이나 도서관 상호간 전송을 염두에 둔 서비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책의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

»» 질문 122

딸림자료를 서버에 저장하여 온라인서비스 할 경우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의 딸림자료를 서버에 저장한 후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것인가?

딸림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딸림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저작물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활한 실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일련의 데이터 조각들이 딸림자료를 구성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저작권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서비스와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에 저작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딸림자료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자료와 마찬가지로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이 경우 대개의 딸림자료들은 디지털 형태로 제작이 되어 판매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서버에 올리거나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질문 123

참고문헌을 다른 DB와 링크시켜 제공할 경우

연구보고서의 참고문헌 가운데 다른 DB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에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나?

저촉되지 않는다.

링크는 다른 정보 제공 사이트로 트래픽이 유입될 수 있는 안내 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링크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바가 없다.

프레임 링크와 같이 저작물을 제공처를 오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경우에는 성명표시권의 침해와 같은 저작권격권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없지 않으나, 일반적인 링크나 직접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질문 124

구독중인 전자저널을 재유포 또는 재가공할 경우

라이선스에 의하여 전자저널을 구독할 경우 이 자료를 재유포 혹은 재가공할 수 있나?

라이선스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이선스는 저작물 공급자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일종의 사적인 계약이다. 사적 계약이라함은 저작권법의 일반적인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항에 대한 이용 허락이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도출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작물의 재유포나 재가공이 필요한 범위나 요건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저작물 공급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러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계약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고, 양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면 원하는 방식으로의 저작물 이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질문 125

인터넷 자료의 다운로드 및 서버 저장 후 서비스 할 경우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PDF파일을 링크로 제공하면 사라지기 쉬우므로 다운로드하여 서버에 보존용으로 저장하고, 이용자에게 전송서비스하려고 한다.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저작권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상 저작물에 CCL과 같이 사전에 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조건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이고, 그 제시된 조건이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방식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재산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물의 복제가 일어나고, 이용자 서비스를 통해서 전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질문 126

교육목적으로 인터넷 자료 다운로드 및 저장 후 제공

웹상에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 해서 도서관 서버에 저장한 뒤 학습자료로 보존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웹상에서 제공하는 자료라고 해서 저작권과 상관없이 모두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도서관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는 명백한 복제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다만 저작권이 소멸되어 이미 공중의 영역에 포함이 된 저작물은 누구라도 마음대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자가 CCL과 같은 저작물 이용 허락의 조건을 사전에 제시한 경우라면 그 이용허락의 조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질문 127

도서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복수의 컴퓨터에 설치할 경우

도서관에서 업무용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는데, 사용자 수와 관계없이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세세한 사항을 법률에 모두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개의 경우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용 조건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의 계약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작물 이용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 경우는 도서관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거래업체와 체결한 라이선스 내용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사용 범위가 결정이 된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기로 한 컴퓨터의 대수를 초과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 질문 128

개인용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사용할 경우

개인용 무료프로그램을 도서관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그렇다.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다.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자가 그 사용을 허락한 것이다. 저작물을 공개하면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하라고 허락의 조건을 제시한 프로그램들은 저작권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무료 프로그램 가운데 상당수는 개인에게만 자유이용을 허락하고, 기업, 법인, 단체의 경우에까지 그 이용허락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용 무료 프로그램의 사용 요건과 이용 약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사용요건이나 약관은 저작물 사용자와 저작물 제공자 사이에 맺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사용 요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도서관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용 프로그램을 도서관이 사용하는 것은 허락의 범위 이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구매하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질문 129

타 도서관 원문 DB를 복제하여 출력을 제공할 경우

다른 도서관의 원문 DB를 우리 도서관의 DB에 올려놓고 이용자가 출력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그렇다.

저작권법 제31조가 도서관에 대해서 허용하는 저작권 면책은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에 한정이 된다. 다른 도서관이 제공한 원문DB를 도서관 상호 전송에 의하여 도서관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에 따르는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도서관이 구축한 원문DB를 도서관의 DB에 올려놓는 것은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의하여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디지털 복제는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질문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면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되어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3.9 콘텐츠 제작

» 질문 130

온라인 서점의 표지, 사진, 저자 약력의 사용 가능 여부

도서관이 이달의 추천도서를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온라인 서점에서 제공하는 표지, 사진, 저자 약력을 사용할 수 있나?

표지, 사진 등은 별도의 저작물에 해당이 되어서 원칙적으로 그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은 이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표지는 표지디자이너에 의해서 제작된 미술저작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 사진은 대개의 경우 사진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저자 약력의 경우에는 저자의 경력사항을 평면적으로 나열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성이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범주에 포함이 되지만, 저자의 독특한 개성이 표현된 독창적인 표현의 약력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온라인서점과 계약을 통해서 도서의 표지, 사진, 저자약력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온라인서점이 적법한 서비스의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표지, 사진, 저자 약력 등을 활용하는 목적이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도모하고, 독서진흥이라는 공익적인 취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또한 저작물의 판매를 잠식하거나 대체하는 등 잠재적인 시장이나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35조의 3이 규정하는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질문 131

영상물 제작시 도서관 소장 음원을 사용할 경우

영상물을 제작할 때 음악자료를 활용하려고 한다. 저작권 문제는 없나?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면 된다.

영상물을 제작할 때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영상물 속에 음악저작물을 고정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제권의 규율 대상이 된다. 다만 대상이 되는 음악저작물이 저작권이 만료되고, 저작인접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CCL과 같이 사전에 저작물 이용허락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이용허락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저작권 처리를 할 수 있다.

» 질문 132

도서관 홍보물에 소장 그림, 사진을 사용할 경우

도서관 홍보물이나 행사 안내에 사용하는 그림이나 사진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

각종 행사나 도서관 안내를 위한 홍보물에 사진이나 그림을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에 해당한다. 인쇄물로 제작된 홍보물에 사진이나 그림이 인쇄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는 저작물을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명백하게 복제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그림이나 사진의 저작권자에게서 적절한 허락을 받은 이후에 저작물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그림이나 사진이 이미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CCL과 같은 저작물 이용에 관한 조건을 사전에 표시해 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별도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질문 133

도서관이 소장한 미술품을 복제하여 출판물을 제작할 경우

도서관이 소장한 미술품을 복제해서 출판물을 제작할 수 있나?

소장 미술품의 판매나 간단한 소개를 위한 도록이라면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35조는 미술저작물의 원본 소유자가 전시를 하거나 미술저작물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 제작되는 목록형태의 책자는 순수하게 미술저작물의 판매를 돕기 위해서 제작되는 것으로, 미술작품을 감상하거나 그 자체로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양질의 도록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서관이 소장한 미술품을 판매할 의향이 있어서 구매자가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목록 형태의 도서를 발간하는 정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 진행할 수 있다.

»» 질문 134

프리웨어를 활용하여 도서관 홈페이지를 제작할 경우

프리웨어를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가?

프리웨어에서 제시하는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다.

프리웨어는 저작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저작물을 인터넷에 제공하면서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저작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대개 프리웨어 등은 그 이용조건을 정해서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그 사용에 앞서 이용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조건을 미리 제시하였다면, 그 제시된 조건의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프리웨어나 프리이미지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한 단서 조항이나 제약 요건이 없이 공개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질문 135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올린 불법저작물에 대한 도서관 법적 책임권한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용자들이 올려놓은 자료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요청을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도서관을 상대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도서관이 책임져야 하는 사항인가?

몇가지 요건 하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은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가 정의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지위를 지니게 되며, 그 가운데에서도 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02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데, 질문의 경우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저장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자가 그 면책을 인정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송신을 시작하지 않고 2) 저작물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3)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 채택 및 이의 이행 4) 권리자가 이용한 저작물 식별 및 보호를 위한 표준적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은 경우 5) 침해행위로부터 직접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을 경우 6) 침해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때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7) 복제, 전송 중단이나 재개에 대한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이다. 이러한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도서관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도서관이 이용자의 침해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질문 136

홈페이지 제작시 클립아트나 그림의 저작권 허락 여부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클립아트나 그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하나?

그렇다.

클립아트나 그림은 모두 미술저작물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미술저작물을 홈페이지의 디자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두 저작권자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관한 허락이 필요하다.

» 질문 137

홍보용 포스터를 썸네일과 메타데이터로 제공할 경우

홍보용으로 제작된 포스터를 활용하기 쉽게 썸네일 이미지로 제작해서 메타데이터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가?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를 대폭 축소하여 제작한 것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썸네일 이미지는 정보 검색을 위한 보조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지만 썸네일 이미지가 원본의 감상을 대체할만한 크기로 상세하게 작성이 된다면 할 때에는 저작물의 복제로 간주하여 취급하기도 한다.

홍보용으로 제작된 포스터의 경우에도 포스터의 미적 구성 등에 있어서 미술저작물적인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일 개연성이 매우 크지만 그것을 썸네일 이미지로 제작해서 검색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메타데이터와 함께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썸네일 이미지를 지나치게 크게 작성해서 원본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제공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질문 138

연속간행물의 목차, 색인의 저작권 보호 여부

연속간행물의 목차, 색인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인가? 학술논문의 초록은 학술 논문 전문과 동일하게 저작권이 적용되나?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학술논문 초록의 경우 도서관에서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가?

연속간행물의 목차와 색인은 연속간행물에 수록된 기사나 논문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창작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초록의 경우는 논문의 내용을 집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인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록은 저자가 직접 작성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관이나 정보관리기관의 담당자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저자가 직접 작성한 초록과는 달리 도서관 등에서 작성한 초록의 경우에는 그 창작적인 표현의 정도에 따라서 도서관 등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서지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한 일이지만, 초록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의 구성을 위해서도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초록은 저작물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초록을 공개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이 자신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록을 공개하는 것이 저작물의 이용이나 판매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까지를 저작권으로 제한하게 되면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의 보호라는 실익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저작물 이용자들의 불편만을 초래하므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 경우는 저작권 제35조의 3이 규정하는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이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 질문 139

동화구연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서비스 할 경우

동화구연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웹사이트에 제공하려고 하는 데, 누구에게 저작권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동화의 작가와 화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여기서 창작자라 함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지적인 표현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람을 일컫는다. 동화의 경우에는 이야기의 작가와 그림의 작가가 모두 저작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저작권은 경제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작자가 반드시 저작권자인 것은 아니다. 동화를 인쇄물인 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출판사가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적법한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질문 140

도서관 개설 강좌에서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경우

도서관에서 개설한 비디오 제작 강좌에서 도서관 오디오, 비디오 자료를 이용하여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때 저작권 관리와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도서관이 지는가?

비디오 제작 행위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사람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작된 비디오의 생산과 배포의 목적과 주체가 누구인가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뮤직비디오를 개인적인 감상용으로 제작한 경우라면, 그것은 일종의 사적 이용에 해당이 되어서 저작권에 관한 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제작이 된 비디오를 사적인 이용의 범주를 벗어나서 온라인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발행하려고 한다면 이때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도서관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뮤직비디오를 배포하거나 발행할 경우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책임에서 도서관이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한 경우에까지 도서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저작권 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수강생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질문 141

도서관 소장 이미지 자료를 웹사이트 구축에 활용할 경우

도서관이 소장한 이미지 자료를 웹사이트 구축에 활용하였는데, 저작권 문제가 있는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

도서관이 소장한 이미지 자료라고 하더라도, 도서관이 마음대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은 소유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도서관의 복제와 전송에 대한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자료 보존의 필요성이나 조사, 연구를 위한 이용자에 대한 지원 등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도서관이 소장한 이미지 자료라고 하더라도 해당 이미지를 활용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해당 이미지에 CCL과 같은 이용허락의 조건이 미리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허락의 조건 범위 내에서 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질문 142

CCL 정의

CCL이란 무엇인가?

자유이용허락제도이다.

저작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저작권이 보호가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학술논문의 저자는 저작물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저작물이 널리 활용되어서 자신의 연구성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확산되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물을 어떤 사이트에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자유로운 사용을 주저하게 된다.

이러한 저작권 제도가 가진 맹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바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다. CCL은 스탠포드대학교 법학과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의 제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면서 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의 조건을 미리 표시해두는 일종의 자유이용허락제도이다. 저작물에 미리 표시된 저작물 이용 조건의 범위에서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저작물 이용을 제약하는 조건에서 자유롭게 된다.

»» 질문 143

CCL 라이선스 저작물 이용 방법

CCL 라이선스가 붙어있는 저작물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CCL의 라이선스는 저작자 표시, 영리적인 사용 여부의 허락, 저작물의 임의적인 변경 가능 여부 등을 조합해서 사용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CCL 라이선스가 붙어 있는 저작물에 붙어 있는 라이선스는 아래의 그림과 같으며, 그 제시된 조건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 질문 144

도서관 홍보에 인기 만화 캐릭터를 사용할 경우

도서관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인기 만화의 캐릭터를 사용해도 되나?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캐릭터는 만화, TV, 영화, 신문, 잡지, 소설, 연극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물건의 특징, 성격, 생김새, 명칭, 도안, 특이한 동작과 작가나 배우가 특수한 성격을 부여하여 묘사한 인물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상품이나 서비스, 영업에 수반하여 고객흡인력 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캐릭터의 이용은 관행상 캐릭터 보유자(권리자)에게 사용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댓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상품화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저작권법이나 그 밖의 지적재산권법에서 캐릭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판례 등에 의해서 캐릭터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인기 만화의 캐릭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캐릭터 보유자에게 적절한 허락을 받은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질문 145

학교도서관에서 지원하는 학교신문에 소장자료를 일부 수록할 경우

학교도서관에서 제작을 지원하는 학교신문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의 일부를 수록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가?

학교 신문의 제작을 학교도서관에서 지원한다는 사실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이 경우 초점을 맞추어서 보아야 할 것은 학교신문에 저작물의 일부를 수록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는 일인가를 살피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저작권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한 인용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첫째, 인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공표되었어야 한다. 둘째,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정당한 범위 이내에서 인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정도가 정당한 범위인가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의 대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넷째, 그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예컨대 자료의 출처와 저자에 대한 표시를 한다거나, 불필요한 왜곡이나 수정을 하지 않는 등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학교신문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인용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10 홈페이지 관리

» 질문 146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음원의 도서관 홈페이지를 위한 재사용

도서관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데 다른 곳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나 사진을 사용해도 되는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은 후에 이용하여야 한다.

이미지나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에 해당이 된다. 다운로드를 받을 때 그 복제와 이용 조건에 대해서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은 복제물은 그 자체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이미지나 사진을 홈페이지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진이나 이미지의 경우에도 모두 저작권자의 적절한 허락을 받은 후에 이용해야 한다.

»» 질문 147

이미지, 음원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이미지와 음악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

홈페이지에 이미지나 사진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다만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이미지나 음악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음악의 경우에는 저작권자 이외에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된다. 따라서 음악의 사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과 더불어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도 동시에 받아야 한다.

»» 질문 148

온라인 서비스와 이용자 수

홈페이지 사용자 수를 제한하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홈페이지에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수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한된 그룹만으로 홈페이지 사용자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지와 같은 소규모의 집단의 범위를 벗어나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복제와 전송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다만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을 도서관 관내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허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디지털로 서비스되는 저작물의 동시사용자 수가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의 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에 따르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 질문 149

홈페이지 글꼴의 저작권 허락 여부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글꼴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인가?

보호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글꼴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글꼴 그 자체의 저작물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컴퓨터에 활용되는 글꼴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글꼴이 적법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저작권과 관련되는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에서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이 아닌 글꼴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의 책임을 부담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글꼴을 지원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 해당 글꼴을 적법하게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홈페이지에 사용한 글꼴을 저작권 침해로 이유로 글꼴 디자인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의 화면 구성에 사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서 적법하게 지원하는 글꼴만으로 홈페이지 디자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주업체에 의뢰해서 홈페이지 디자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글꼴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글꼴과 관련된 책임이 발생할 때 관련 책임을 함께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 질문 150

도서관 직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도서관 책임

도서관 직원이 도서관이 제공하는 웹상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때 도서관의 책임은?

도서관 직원의 책임이다.

도서관 직원이 도서관이 제공하는 웹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직원이 누구의 명의로 행위에 참여하였는가에 따라서 그 법적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직원이 도서관의 직무상의 명칭을 활용하거나 도서관을 대신해서 이루어진 행위에 의해서, 또한 도서관의 직무 행위의 일환의 작업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행위를 수행한 자연인이 누구인가와 무관하게 도서관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도서관의 공식적인 직무 명칭이나 직함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으로 행한 행동에까지 도서관의 책임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무리 도서관 직원이 도서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벌인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사적인 관심과 사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 부분에까지 도서관의 책임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는 모든 책임은 그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인 도서관 직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 질문 151

홈페이지 관리 외부 직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도서관 책임

홈페이지 관리를 외주에 맡겼는데, 웹마스터에 의해서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도서관의 책임은?

일차적인 책임은 도서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를 외주에 맡기고, 외주업체의 웹마스터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외주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는 도서관을 대리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1차적인 책임은 도서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외주업체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나 계약 위반에 관한 책임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경우 1차적인, 대외적인 책임은 도서관이 부담하고, 도서관은 해당 외주업체를 통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홈페이지 제작이나 관리를 외주에 의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저작권과 관련되는 주의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편이 보다 바람직하다.

»» 질문 152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설비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구축하였을 경우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의 기기를 활용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을 경우 도서관이 책임을 지는가?

도서관의 책임이 아니다.

복제나 전송에 사용된 기기를 제공한 것만으로 도서관의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최근의 도서관은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전통적인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수가 급증하면서 관내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보편화 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이용자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행위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이다. 이용자 각자의 개인적인 행동을 도서관이 일일이 감시하거나 점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는 독립적인 개인의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전적으로 그러한 법적인 행위를 행한 사람의 책임이다. 복제나 저작권 침해가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기계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도서관이 운영하는 서버나 관련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 도서관이 법적으로 부담할 책임은 없다.

» 질문 153

도서관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도서관 책임

도서관의 웹마스터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도서관이 부담해야 하는가?

도서관은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나목이 정의하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에 해당되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도서관은 그 가운데에서도 저장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분류될 수 있어,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책임의 제한 여부가 결정된다. 저장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을 인정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송신을 시작하지 않고 2) 저작물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3)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 채택 및 이의 이행 4) 관리자가 이용한 저작물 식별 및 보호를 위한 표준적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은 경우 5) 침해행위로부터 직접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을 경우 6) 침해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때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7) 복제·전송 중단이나 재개에 대한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웹마스터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는 사항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도서관이 이용자의 침해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11 기타

»» 질문 154

도서관 사서 저작물의 저작권 범위

공공도서관 사서의 저작물도 저작권이 발생하는가? 도서관 사서가 업무 이외로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공공도서관의 사서의 저작물도 저작권이 발생하며, 업무 이외로 작성한 저작물의 원천적인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직접 생산한 사서이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것을 창작하는 데 직접 관여한 사람은 저작자가 되어 저작권이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공공도서관 사서의 저작물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모두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본래 저작권은 자연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이지만, 법인 등의 종사자가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를 살펴려면 공공도서관의 사서가 작성한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도서관의 기획 하에 사서가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31호)에 해당이 된다.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서가 자신의 업무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상 저작물을 도서관의 이름으로 공표하여야 하고(컴퓨터프로그램은 예외) 도서관과 직원 사이에 저작권에 관한 특약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만 업무 이외로 작성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에 직접 관여한 사서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된다.

»» 질문 155

필사본의 저작권 귀속 여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오래된 필사본 같은 경우 저작권은 누구한테 귀속되는 것인가? 도서관인가?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저작물의 소유와 저작권의 보유는 서로 무관한 사항이다. 도서관이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다고 해서, 도서관이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필사본의 저작자를 확인하고, 저작자의 사망여부와 사망 시기를 확인하는 작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저작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서 저작권이 소멸이 되었을 수도 있고, 저작권이 존속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소유권과는 달리 그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더불어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를 저작권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법률이 개정되어 발표되기 이전(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 사후 70년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는 이미 소멸된 것이다. 즉, 1962년 및 그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오래된 필사본의 저작자가 1962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저작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다. 한편 1962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저작자 사망 70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저작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저작권은 경제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질문 156

학교도서관이 수집한 학생 작품의 저작권 여부

학교도서관에서 수집한 학생이 그린 그림과 글씨, 작문에도 저작권이 있는가?

그렇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되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창작성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배끼지 않고 직접 만들어낸 것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그리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습작으로 그린 그림이나 작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창작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그린 그림이나 작문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고유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모두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다. 다만 일반적인 의사표현을 위해서 작성된 글씨와 글씨체(서체, 글꼴, Type)의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다. 서예와 글 자체로 예술적인 표현을 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김기태. 2009. 『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 저작권 상담사례 200선』. 서울: 이체.
- 김윤명, 정준민. 2002.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개정 저작권법(안)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9(2): 181-201.
- 김종철, 김영석. 2012.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관련 권리제한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349-369.
- 남윤희. 1999. 『디지털도서관에 있어서의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공정사용에 관한 연구: 미국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천안대학교 국제대학원, 미국학과.
- 森田盛行. 『學校圖書館と著作権 Q&A』. 2000. 第3版.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 오승중. 2013. 『저작권법』. 제3판. 서울: 박영사.
- 이해완. 2012. 『저작권법』. 제2판. 서울: 박영사.
- 유희경. 2012.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 문제와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윤종수 등저. 2012. 『친절한 저작권법 ㉔』. 인천: 북스페이스.
- 윤희운. 2010.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비교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277-301.
- 이호신. 2002. 『인터넷 시대의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이호신. 2006.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공연권에 관한 연구. 『도서관』, 61(1): 45-62.
- 日本圖書館協會 著作権問題委員會 編. 2001. 『圖書館活動と著作権 Q&A』. 日本圖書館協會.
- 임원선. 2009. 『저작권법』.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 정경희. 2012. 공공도서관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133-155.
- 채명기, 신명우. 2010. 『쉽게 익히는 이야기 '쑥' 학교 저작권』.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최경수. 2010. 『저작권법 개론』. 서울: 한울.
- 하동철. 2006. 『공연권에 관한 연구: 재구성권 제한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 『도서관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 지침서』.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7. 『교육정보 활용을 위한 저작권』.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2008. 『도서관 서비스와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사대도협 연구보고서 제8호. 서울: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 홍재현. 2004.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93-119.
- 홍재현. 2011. 『도서관과 저작권법』. 제2판. 서울: 조은글터.

- 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2012. *Copyright for Librarians: the Essential Handbook*, EIFL.
- Bielefield, Arlene and Cheeseman, Lawrence. 1997. *Technology and Copyright Law: A Guidebook for the Library, Research, and Teaching Professions*. New York and London: Neal-Schuman Pub.
- Bruwelheid, Janis. H. 1995. *The Copyright Primer for Librarians and Educators*. Chicago and Lond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Cornish, Graham P. 2009. *Copyright: Interpreting the Law for Libraries, Archives and Information Services*. 5th ed. Facet Publishing.
- Crews, Kenneth D. 2012. *Copyright Law for Librarians and Educators: Creative Strategies & Practical Solutions*. 3rd. e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Hirtle, Peter B., Hudson, Emily and Kenyon, Andrew T. 2009. *Copyright & Cultural Institutions: Guidelines for Digitization for U.S. Libraries, Archives, & Museum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Library.
- Lipinski, Tomas A. 2005. *The Complete Copyright Liability Handbook for Librarians and Educators*. New York and London: Neal-Schuman Pub.
- Minow, Mary and Lipinski, Tomas A. 2003. *The Library's Legal Answer Book*.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Russell, Carrie. 2012. *Complete Copyright for Librarians and Educator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Wherry, Timothy L. 2002. *The Librarian's Guide to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Digital Age*. Chicago and Lond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도서관연구소 자료집 41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

집필	정경희(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연구책임) 최상희(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이호신(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감수	이대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수(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
기획·편집	김태경(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인 쇄 | 2014년 2월 28일

발 행 | 2014년 2월 28일

발 행 인 | 임원선

발 행 처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주 소 | (137-702)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 화 | (02)590-0653

팩 스 | (02)590-0502

홈페이지 | <http://www.nl.go.kr>

본 매뉴얼은 201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용역으로 수행되었던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 개발 연구』의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매뉴얼에 제시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 연구자의 견해를 밝히드립니다.